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인권실천을 위한 교정복지학대

* 일 시 : 2007년 11월 16일 (금) 15:00

* 장 소 :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주영 -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인권실천을 위한 교정복지학대

* 일 시 : 2007년 11월 16일 (금) 15:00

* 장 소 :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주영 ·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인사말씀

장장했던 활엽나무의 윤기가 저물어 그 잎새는 가녀린 모양으로 소록히 내려 앉았습니다. 쌔늘 히 여미는 끝자락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즙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귀빈과 학회 임원 및 회원들의 성원속에 ‘인권실천을 위한 교정복지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속에 영어(圓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교정복지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게 됨을 아주 뜻 깊게 여깁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분야를 조망하는 것은 꼭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구나 희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경우나 비슷합니다. 죄가로 형벌을 치르는 수형자의 욕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지었으되, 그들의 기본적 욕구는 보살펴져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진정한 교정과 교화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삶에 대한 욕구와 희망을 돋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일구는데 작지 않은 기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만인이 평등하고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속되고 억압되며 착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에서, 경제능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별 또한 만연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존재 합니다. 또한 인류전체의 공동선이라 할 윤택한 생활, 평안한 행복을 꾀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이념에 반하는 각양의 불합리와 비민주적 현상도 실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의 설립취지요, 핵심적 역할입니다. 우리사회의 병리를 적극적으로 조망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그 일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권과 사회복지이념을 실천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자 정성을 다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회 고문으로, 커다란 울로써 이 대회를 위해 크고 작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주영의원께 학회 전회원의 이름으로 찬사와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이 대회가 보다 많은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담보한 사회를 일구는데 조금의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16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정승재

경과사

‘교정의 날’이 제정된 지 62년의 성상을 맞았습니다.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가 “인권실천을 위한 교정 복지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2007년 추계학술대회를 저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는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와 교도소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하는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교도소가 단순히 수감 시설이 아닌 명실상부한 교정 시설로 탈바꿈하여 우리도 “교도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수형자 인권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과감한 인식전환으로 행형법이 이제 단순히 수형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의 “권리장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야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차츰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업무 담당자들에게도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소신껏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과 복지가 공유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정승재 회장님과 학회 학회관계자 여러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승성신 법무부 교정국장님, 천정환박사님, 이상돈교수님, 이영우신부님, 노명선교수님, 박영숙교수님, 이대희교수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국 회 의 원 이 주 영

목 차

•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천정환 ■ 1
•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 20
•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박영숙 ■ 27
•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문	이상돈 ■ 53
• "사형제도와 인권침해"에 대한 토론문	노명선 ■ 55
•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대희 ■ 59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천 정 환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이사)

- 요 약 -

국가나 사회가 행하는 상징폭력에는 의도적 상징폭력과 비의도적 상징폭력이 있는데 둘의 구분 실익은 전자의 경우에는 상징폭력의 모순을 아는 피지배층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항운동이나 개혁운동이 자생적으로 발생해 상징폭력의 규범체계가 변동될 수 있지만 (가령, 박정희 전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 등의 상징조작으로 독재를 호도한 상징폭력에 대해 저항운동이 발생해 유신체제가 무너진 것) 후자의 경우에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 그 정책에 내재하는 상징폭력의 허구성이나 상징폭력의 존재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상징폭력의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사회운동도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특수한 지위(가령, 수형자)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영속된다는 점에서 비의도적인 상징폭력의 무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비의도적인 상징폭력의 한 예가 국가가 수형자 등에 대해 헌법상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을 박탈하는 규범체계이다.

국가가 도덕적, 사회적 상징조작에 의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소수자들인 수형자들에게 행하는 참정권, 섹스권 등의 박탈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가치폭력이므로 이런 잔인한 상징폭력 규범체계를 하루 빨리 해체하여 수형자 등 주변부 위치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도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과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먼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형법 제43조와 제44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18조에는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4. 3. 25. 동법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동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인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등 다양한 방면의 의사를 가지며 이런 의사들은 서로 존중되어야 할 독립적 개념이다. 따라서 범죄인이 경제적 의사 등 여러 의사에 의해 행한 범죄의사와 국민주권과 관계된 정치적 의사와는 전혀 다른 범죄행위 자체에 입법자가 도덕적이고 응보적 가치를 적용해 정치적 의사인 수형자의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및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되며 일정선거연령이 된 자는 누구든지 선거권을 가진다는 보통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인 차별적 태도는 수형자의 심리적, 정치적 소외감을 촉진시켜 정치적 주변화를 고착화시키며 정치적, 사회적 재통합과 회복적 사법을 저해함은 물론 공직선거의 대표성이 저하된다. 또한 수형자의 교화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국민주권은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국가는 이런 중요한 기본권을 더욱더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사형수도 집행을 당하는 날까지는 존중되어야 할 정치적 주권을 가진 국민이므로 당연히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모두에게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조례제 개정청구권을 인정해야하며 이런 운동의 책임은 깨어있는 지식인의 당연한 몫이다.

인간의 섹스권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요소이므로 수형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섹스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성욕이 적법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므로 만약 도덕적, 응보적 상징조작에 의해 특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섹스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사회적인 상징 폭력이다.

물리적 피해자와 달리 상징폭력피해자는 그런 피해가 상징폭력인줄 모르고 국가의 상징조작에 세뇌되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서 상징폭력 피해의 무서움이 있다. 즉 수형자나 그 배우자(사회)는 국가의 섹스권 박탈이 당연한 것으로 세뇌되어 상징폭력 규범의 모순을 깨닫지 못해 헌법적 기본권이 오랜 세월동안 침해되어왔으며 무서운 사실은 침해되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자나 국가가 소극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 자유형을 가치개입적으로 확대해온 결과이다. 그 결과 수형자와 사회속의 배우자, 애인은 섹스권의 상실로 구체적인 기본권이 정면으로 침해됨에도 수형자는 물론 범죄와 무관한 배우자까지도 그런 섹스권의 박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는 국가의 상징폭력에 세뇌되고 순차된 결과이다. 섹스권의 박탈은 수형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성고문이며 성폭력이고 범률이 금지한 신체형과 부부형벌을 부과한 점에서 국가의 잔인한 가치폭력이다. 범죄의 경증과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 피보호감호자, 사형수에게도 성생활이 권리로서 인정돼야한다. 또한 현재는 수형자에게 흡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형자나 사형수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담배, 술 등의 기호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정신에 맞으며 흡연권을 인정해도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약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데 그것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흡연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

1. 수형자 등에 대한 참정권 인정의 필요성¹⁾

1) 협행법 규정

수형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43조와 제44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법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된 자도 남은 현기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권이 없고 특별사면 받은 자도 복권이 안 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국민 투표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투표권행사는 제한된다. 국민 투표법 제9조에는 국민투표권이 없는 자로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법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형자와 사형수의 참정권 상실 등에 관해서는 형법 제43조와 제44조에 나와 있다. 형법 제43조 제1항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상실되는 자격으로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법인의 업무에 관한 겸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들고 있다. 형법 제43조 제2항에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1호 내지 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44조에는 제43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지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고 하여 자격정지에는 자격의 당연정지와 판결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무기수와 사형수는 국민투표권을 상실한다. 한편 피치료감호자와 각종료된 피치료감호자는 선거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구사회보호법 제38조에 의해 피보호감호자와 가출소된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회보호법이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동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보호감호가 결정된 자들이 있는 관계로 경과규정에 의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²⁾

1) 수형자 등이란 수형자, 사형수, 피보호감호자, 피치료감호자를 의미한다. 또한 참정권에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이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보호감호가 폐지되어 청송감호소가 청송제3교도소로 변경되어 현재 60명 정도의 피보호감호자가 수용중이며

한편 구사회보호법 제38조와 국민투표법 제9조에는 감호대상자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음에도 이들의 국민투표권을 수십 년 동안 실무상 박탈해왔다.

2)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04. 3. 25)

(1) 본 사건 청구인은 2002. 2. 26.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던 자로,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 투표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에 있는 자의 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행사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투표하지 못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6. 20. 동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형집행자의 참정권(헌법 제24조)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시사항

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자)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나. 선거권의 의미와 입법재량의 한계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결정요지

가.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 등의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3.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은 이 심판청구에서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을 갖추었다. 또한, 청구인이 투표하려 하였던 위 6·13 지방선거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청구인의 투표참여 문제가 다시 제기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전히 청구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는 국민의 참정권 중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 아래에서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납세·병역·준법 기타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일정한 기간 구금을 명하고 구금시설인 교도소 등의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입법자가 일용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정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한정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는 등 선거권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며 내용적으로도 그 불이익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벌인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한 효과에 불과하다. 또한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수형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본권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간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의 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선거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의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사건)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된 판결이며 언젠가는 이번 판결이 뒤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먼저 현재가 사용한 용어의 문제점인데 현재는 결정요지에서 교도소를 구금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 1961년 행형법 1차 개정에서 구금시설의 의미가 강한 "형무소"를 교정적 시설의 의미를 가진 "교도소"로 개정했기 때문이며 교도소는 구금기능만 있는 구치소, 유치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행형법 제1조 정신에 의해 하위 개념이며 수단적 개념인 "구금"의 기능과 상위 개념이며 목적 개념인 "교화 기능을 가진 교정" 시설이지 구금자체를 목적적 개념으로 하는 구치소와 같은 "구금"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구금시설이 가지는 상징성(옹보주의)과 교정시설이 가지는 상징성(교육형주

의)은 중요한 차이가 나므로 용어의 엄격한 구분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선거권 부정의 한 이유로 “납세, 병역 등을 불이행……”을 들고 있으나 “병역”을 포함시킨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납세”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지 수형자도 소내에서 물품구입으로 간접세를 납부하며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세 등의 직접세도 내며 또한 가석방된 수형자(복권 안 된)는 사회 내에서의 근로활동으로 소득세 등의 직접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미납과 선거권 부정을 연결시키는 응보주의적 태도는 응보주의를 금하고 교육형주의를 채택한 행형법 정신과 배치되며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한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아울러 현재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선거권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령, 대선이나 국회 선거에 나올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정 이전부터 허용되고 있는 신문열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알며 또한 각 후보의 선거 공약 홍보책자도 사회인과 같이 수형자들에게 송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정보제공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질적이며 목적적 요소인 “주권의 행사”가 침범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수형자 선거권제한의 근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드나들 이것 역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격한 인적, 물적 계호가 완비된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선관위 직원이 보는데서 행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에 의한 선거권의 행사가 어떻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지 도대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현재가 들고 있는 “형별집행의 실효성 확보” 문제도 부재자투표형식을 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으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등의 공익이 선거권행사하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 보다 크고 법익간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하나 앞에서의 논리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 등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선거권의 제한으로 인해 수형자의 기본권만 침해된다는 법적, 소극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이 교화재(教化財)라는 공공재의 생산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수형자에게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을 인정하게 되면 자치의식의 증대와 공동체 질서형성에의 참여감의 증대와 그로인한 준법욕구의 증대 등 교화에 좋은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에도 기여하며 회복적 사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선거권을 부정하게 되면 기본권 침해 같은 소극적 측면 외에 국민주권의 실현에서 완전 소외되는 심리적 분노와 무력감의 촉진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중심부(일반인)와 주변부(수형자)의 양극적 구도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재통합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교화재의 생산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면 다양한 국민의사(가령 반정부 범죄인)의 실현을 촉진해 민주주의에 기여함

은 물론 수형자의 선거권의 행사가 있어도 다른 어느 누구의 정치적 효용이 훼손되지도 않는 정치적 재화의 파레토 최적을 가져와 정치적 복지의 증대 및 헌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공공복지의 증대를 가져온다.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소극적으로는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와 적극적으로는 교화재라는 공공재의 훼손과 사회적 재통합의 저해 및 선거의 대표성이 저해된다.

4) 현제도의 문제점과 참정권 인정의 당위성 사견³⁾

생각하건대, 자유형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그리고 청구권 및 참정권과 사회권을 내포하는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는 기본권형이 아니다. 이미 수형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의 일부, 청원권, 재판청구권(재심의 경우), 환경권, 보건권 등의 일부 사회권 등이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중에 있다. 또한 자유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없이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의 해석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원칙은 기본권 중 자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권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참정권의 하나인 선거권을 제한할 이유가 자유형의 본질상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히려 수형자에게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해도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에 저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해도 타인의 효용을 저하시키지 않고 파레토최적을 달성해 사회의 총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확실하게 구금, 격리되어 있는 수형자들이 부재자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선거당일 선거권을 행사하여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등에 관한 법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침해를 금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위헌 법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참정권은 국민주권주의와 관계되는 정치적 의사의 영역이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 의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을 구성하여 국가권력행사를 통제 내지 견제하는 민주적, 정치적 권리이다. 또한 개별적인 민주적, 정치적 권리임 국민의 능동권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정권의 행사는 필수적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는 의사에는 정치적 의사, 경제적 의사, 사회문화적 의사, 종교적 의사, 예술적 의사, 윤리적 의사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의사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적 신념과 의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종교적 의사에 근거해

3) 영국 및 대부분의 남미국가는 선거권을 부정하며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은 선거권을 인정(다만, 이들 국가도 선거사법에게는 부정)하고 캐나다, 호주, 필리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형의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캐나다는 2년미만의 수형자에게만 부여한다고 한다(중앙선관위, 외국선거제도비교, 2005~2006년).

병역을 거역해 관련법에 의해 수형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존중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권을 제한함은 종교적 의사나 범죄의사는 정치적 의사와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확대 적용해 정치적 의사와 관련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그 필요요건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즉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된 범죄의사에 근거해 형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정치적 의사인 선거권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현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한 개인이 잘못된 범죄의사에 대한 책임을 형법적 책임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다른 의사의 영역에까지 구속해 입법권을 과잉행사하고 있는 바 이는 가치폭력이며 상징폭력이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주권주의와 관계되는 형행법 제1조와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행행법 제3조와도 배치되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의사의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형자에게는 동법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며 동시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인 영역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전과자는 후천적인 사회적 신분이기 때문이다. 유기형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만 아니라 형법 제43조와 제44조에서도 나와 있다. 이 경우도 앞에서 본 논리와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는 형법 제43조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형법 제44조에서는 판사의 판결선고에 의해 선거권 등의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도 위헌의 여지가 보인다.

먼저 선거권 등의 자격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선고로 정지되는 선고정지가 있다. 당연정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논리대로 위헌의 여지가 있으며 여기서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선고정지의 문제점을 적고자 한다. 판결선고에 의한 선고정지는 자격형의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으며 자격정지의 기산점은 유기형에 병과형으로 된 때는 유기형이 면제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되고 선택형으로 자격정지가 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의 선고는 선택형이든 병과형이든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 참정권과 관련된 범죄자나 정치적 의사와 관련된 범죄자이든 또는 그런 정치적 의사와 무관한 일반 범죄자이든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의사 및 선거권을 판결로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친 월권행위로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조항과 참정권 조항을 침해한 것으로 응보주의적 조항이다.

정치적 의사와 무관한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해야 되며, 징역 등의 자유형을 가하고도 자유형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선거권까지 자격을 병과해 정지시켜 형의 집행기간 내에서 만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시 자격이 정지된 기간까지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외시키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된 지나친 처벌로 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일반범죄의 의사와 범죄 행동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범죄의사에 대해서만 재판해야지 책임주의에 따라 유기형을 선

고하고도 응보적 사고방식에 의해 그것을 확대해 범죄의사와 무관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범죄인의 정치적 의사에 대해서까지 심리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선거권 등의 자격형까지 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 태도는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며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관련 법률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감정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들은 법률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결과 선거를 통한 전정한 국민통합에도 장애를 가져오며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실질적인 직무유기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대표성이 제고되고 수형자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의 증대와 국민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무기형 수형자와 사형수는 형법 제43조에 따라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상실하는데 앞에서 본 논리와 마찬가지로 범죄의사에 따른 형법적 책임과 국민주권주의와 관계되는 참정권을 결부시켜 무기수와 사형수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형법 제43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한번 사형이나 무기형 판결을 받은 자는 감형 또는 가석방이 되어 출소하더라도 사면법에 의한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며 무기 수형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참정권을 법률에 의해 박탈당하는 입법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며 유기형 수형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기형 15년을 선고받은 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행형성적이 좋지 않아 가석방이 되지 않아 만기 출소된 자는 출소한 날로부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이 다 인정된다. 그러나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 등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어 그가 재범의 우려성이 없고 행형성적이 우수해 10년 뒤에 가석방이 되어도 그는 복권이 안 되면 영원히 선거권 등의 자격이 상실되어 가석방된 무기형 수형자보다 재범의 우려성이 있어 교도소에서 더 많은 기간을 복역한 앞에서, 본 유기형 수형자의 경우와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된다.

사형수도 범죄의사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 의사에 대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의 정치적 권리에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사형집행을 행하는 날까지는 존중되어야 할 정치적 주권을 가진 국민이므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서는 선거법으로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자 또는 선거법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선거사법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지만 필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선거사법도 그에 대해서는 범죄 대가로 법적 책임이 주어졌음에도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범죄의사와 전혀 성격이 다른 정치적 의사와 국민주권과 관련된 선거권과 결부시켜 선거권을 제한시킴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며 실질적으로는 이 중처벌의 효과를 가진다.

그 범죄가 선거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지만 선거법이라는 외연만 보고 형벌 외에 다시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친 응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마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을 과하고 나서 다시 일정기간 동안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말

라고 부관을 붙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사법으로 형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형자 등에 대한 섹스권 인정의 필요성

1) 현행제도

수형자의 섹스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섹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가족접견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교도소 내의 장소에서 1박2일의 가족접견을 할 수 있는 부부접견제도의 하나인 부부만남의집 제도를 199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29일에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에 13평 규모의 단독주택(침실 2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을 교도소 내에 설치하여 부부만남의집이라고 명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와 그의 배우자나 부모, 가족과의 1박2일 동안의 만남을 허가하고 있는데 그 뒤 마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홍성교도소, 전주교도소, 청송교도소, 포항교도소 내에 부부만남의집이 설치되어 2007년 4월 현재 전국 교도소 중 10개의 교도소 내에 부부만남의집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에는 부부접견에 관한 근거는 없고, 1999년 5월 20일에 제정되어 2000년 3월 21일에 개정된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예규교화 61490-74, 2000. 3. 31)에 자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부부접견제도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부부만남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로서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제3항에 따라,

① 형기가 5년 이상인 수형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누진 2급 이상인 자로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부부만남의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때 가족은 수형자의 직계존속, 비속으로 하고 1인원은 1회에 5인은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감호집행 개시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감호행장 “다”급 이상인 피보호감호자.

⑤ 그러나 이상의 요건이 구비되었어도 가정파괴범, 조직폭력배,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악취유인 등 반인륜적 범죄자, 조직폭력배, 상습 마약범죄자 등 사회물의 사법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지침 제4조에 따라서 부부만남의집을 이용하려는 자는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분류처우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되, 다만 귀휴를 갔다 온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2회 이상 부부만남의집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 교정국 교화과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54,941명인데 비하여 부부만남의집을 이

질적 측면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위장한 애인의 경우도 교정기관은 보안상 문제 외에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교정기관은 도덕기관이 아니고 교화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은 그 대상자로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만 인정하므로 치료감호자, 기혼인 소년원생, 미결수용자, 사형수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수는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더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법무부 예규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 가정파괴범,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악취유인 등 반인륜적 범죄를 범한 자, 조직폭력배, 상습마약범죄자 등을 이용요건을 구비했어도 제외시키나 이것 역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특정범죄에 지나치게 윤리적 색채를 가한 응보주의적 산물로 응보보다 교화를 지향하는 현대 교정이념에도 맞지 않고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형자의 성생활권 제한정책은 수형자 외에 그의 배우자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가령, 수형자의 배우자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배우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사실상 국가에 의한 부작위적인 불리한 처우(성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의 박탈)를 받게 되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제13조를 광의로 볼 경우 헌법정신을 사실상 위배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관점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수형자가 입소한 뒤 2년 또는 3년만 지나도 배우자들이 이혼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혼의 원인에는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성생활의 박탈이 중요한 원인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무기수의 경우에는 무기수 자신만 아니라 그의 부인에게는 고통스러운 미래가 예상되는데 7년이 지나야 부부접견제도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정당국이 가족해체 현상을 촉진시켜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생활권이 박탈된 수형자들은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교도소 내의 동성애나 계간 등이 발생해 이로 인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것은 교정재 생산에 저해가 되고 교정기관에도 부담을 준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생활권이 박탈되면 결국은 배우자의 간통이 증가되거나 이혼이 증가되고 따라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경제적, 정서적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경향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섹스도 서비스적 재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수형에게 부부 접견이 자유로이 허용된다면 그 배우자의 섹스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아주 높고 한계효용의 크기가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섹스재화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4) 남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중앙아시아, 스페인 등지에서는 성생활권을 권리로 인정하며(Andrew Coyle, A human f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London King's college, 2002, 96~98면)
캐나다, 필리핀, 인도, 러시아, 스칸디나비아제국도 권리로 인정하나 원양방 제도를 가진 중국의 일부교도소, 대만은 시혜적 조치로 인정한다. (천정환, 교정학, 대왕사, 2005, 587 이하)

라고 부판을 붙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사법으로 형별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형자 등에 대한 섹스권 인정의 필요성

1) 현행 제도

수형자의 섹스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섹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가족접견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교도소 내의 장소에서 1박2일의 가족접견을 할 수 있는 부부접견제도의 하나인 부부만남의집 제도를 199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29일에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에 13평 규모의 단독주택(침실 2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을 교도소 내에 설치하여 부부만남의집이라고 명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와 그의 배우자나 부모, 가족과의 1박2일 동안의 만남을 허가하고 있는데 그 뒤 마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홍성교도소, 전주교도소, 청송교도소, 포항교도소 내에 부부만남의집이 설치되어 2007년 4월 현재 전국 교도소 중 10개의 교도소 내에 부부만남의집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에는 부부접견에 관한 근거는 없고, 1999년 5월 20일에 제정되어 2000년 3월 21일에 개정된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예규교화 61490-74, 2000. 3. 31)에 자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부부접견제도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부부만남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로서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제3항에 따라,

① 형기가 5년 이상인 수형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누진 2급 이상인 자로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부부만남의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때 가족은 수형자의 직계존속, 비속으로 하고 1인원은 1회에 5인은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감호집행 개시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감호행장 “다”급 이상인 피보호감호자.

⑤ 그러나 이상의 요건이 구비되었어도 가정파괴법, 조직폭력배,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악취유인 등 반인륜적 범죄자, 조직폭력배, 상습 마약범죄자 등 사회물의 사법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지침 제4조에 따라서 부부만남의집을 이용하려는 자는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부만남의집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예상되는 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매춘부 등이 애인으로 위장하여 미혼 수형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러한 부수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본

질적 측면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위장한 애인의 경우도 교정기관은 보안상 문제 외에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교정기관은 도덕기관이 아니고 교화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부부만남의집 운영지침은 그 대상자로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만 인정하므로 치료감호자, 기혼인 소년원생, 미결수용자, 사형수에게는 인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수는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더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법무부 예규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 가정파괴법,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악취유인 등 반인륜적 범죄를 범한 자, 조직폭력배, 상습마약범죄자 등은 이용요건을 구비했어도 제외시키나 이것 역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특정범죄에 지나치게 윤리적 색체를 가한 응보주의적 산물로 응보보다 교화를 지향하는 현대 교정이념에도 맞지 않고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형자의 성생활권 제한정책은 수형자 외에 그의 배우자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가령, 수형자의 배우자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배우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사실상 국가에 의한 부작위적인 불리한 처우(성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의 박탈)를 받게 되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제13조를 광의로 볼 경우 헌법 정신을 사실상 위배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관점

과거에는 달리 최근에는 수형자가 입소한 뒤 2년 또는 3년만 지나도 배우자들이 이혼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혼의 원인에는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성생활의 박탈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무기수의 경우에는 무기수 자신만 아니라 그의 부인에게는 고통스러운 미래가 예상되는데 7년이 지나야 부부접견제도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정당국이 가족해체 현상을 촉진시켜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생활권이 박탈된 수형자들은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교도소 내의 동성애나 계간 등이 발생해 이로 인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것은 교정재 생산에 저해가 되고 교정기관에도 부담을 준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생활권이 박탈되면 결국은 배우자의 간통이 증가되거나 이혼이 증가되고 따라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경제적, 정서적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경향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섹스도 서비스적 재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수형에게 부부 접견이 자유로이 허용된다면 그 배우자의 섹스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아주 높고 한계효용의 크기가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섹스재화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부부 접견이 허용되면 이혼할 확률도 적어지고 가정파괴 현상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형자에게 생생의 의지를 심어 재범률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접견이 허용 안 되면 결국은 가정파괴 현상도 클 것이고 출소 뒤에도 재범할 확률이 앞의 경우보다 클 것이다. 결

국 그것은 교정비용과 치안비용, 사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국민의 세금을 증대시켜갈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에게 성생활권을 허용하면 그것의 효과는 수형자와 배우자의 개인적 효용의 증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생활 허용정책은 바람직한 정의 외부효과를 가져와 파레토최적의 달성을 및 공공복지후생함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수형자가 가져왔던 코너해(corner solution)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⁵⁾

수용자의 성생활은 존중되어야 할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기혼수형자이든 미혼수형자이든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년수형자라도 결혼을 한 수형자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보호감호소나 치료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 외에는 사형수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의 성생활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에 있는 배우자나 애인의 성적 의사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성생활권은 무제한 인정될 수는 없고 질서유지와 피해자 집단의 감정을 고려하여 소극적 성격을 지녀야 하며 시설이용료는 당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성생활권은 1년 이상의 유기형 수형자 등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자에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간범 등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별할 필요는 없다. 또한 누진계급 등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으며 다만 금치 등의 정벌을 받고 있거나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벌의 위하력도 중요함으로 장기수형자와 사형수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가 사회의 배우자나 애인과 섹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용자(사형수 포함)의 혼인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수용자가 외부인과 혼인할 경우 교도소 내에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교도소를 전국에 몇 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용자의 배우자와의 동거권도 인정하여 입소 뒤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는 배우자를 교도소 내에서 해당 수형자와 같이 부부교도소에 동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령, 배우자의 법적지위, 비용부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3. 수형자 등에 대한 흡연권 인정의 필요성

1) 현행제도

5) 사회인은 섹스재와 일반재에 대해 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내부해를 가지나 수형자는 섹스재에 대해 기호가 고착되므로 수형자의 소비자 균형은 코너해를 가진다. 만약 Y축의 섹스재의 가격이 P_x , X축의 일반재의 가격이 P_y 라면 일반사회인에게는 섹스재가 희소성이 적어 사회인은 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자 균형은 x축과 y축의 내부에서 가격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내부해를 가지고 이때 x와 y의 한계대체율인 $MRS_{xy}=P_x/P_y$ 가 되나 수형자는 섹스재에 대해 희소성을 가지고 이때의 수형자의 소비자 균형은 y축에서 성립하는 코너해를 가지고 이때 코너해에서는 $MRS_{xy} < P_x/P_y$ 가 된다. 이러한 코너해의 발생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이상행동, 우울증,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작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 올바른 사회화를 저해할 수 있다.

구 행형법시행령 제83조에는 보건, 위생, 화기 방지 등의 이유로 음주 또는 흡연을 금지한다는 규정되었으나 2000. 3. 18에 폐지되었고 행형법 46조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한 물건은 제작, 소지 사용, 수수, 은닉 때는 징벌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에서는 음주 또는 흡연하거나 주류 또는 담배를 소지, 수수, 교환, 은닉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흡연권 인정의 필요성

(1) 법적 관점

국가의 합법적인 담배정책 속에 살아온 흡연자가 일순 자신의 잘못된 범죄의사의 결과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교정정책에 의하여 흡연을 금지당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에서 흡연을 하나의 인간다운 생활방식으로 영위해 온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흡연을 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계되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며 또한 그것은 수면권, 휴식권, 흡연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관계된다고 할 수가 있다.⁶⁾

구 행형법 83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수용자에 대한 흡연권을 부정하는 이유는 화재 방지 등의 교정질서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흡연이 기호품이 된 자에게는 흡연권은 그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과 마찬가지이므로 흡연경력자의 수용자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흡연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흡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 안전보장,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해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의 흡연권 등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때는 행형법인 법률로 해야 되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형식에서 어긋나고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담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화재 등 교정질서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수용자에게 흡연권을 일체 부정하는 것은 오랜 응보주의적 역사적 사고의 산물로 과잉입법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수용자에게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흡연의 허용이 교정질서의 저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흡연허용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의 방지는 타국에서 하듯이 성냥이나 라이터는 허용치 않고 금연 구역 내에서만 담배만 주어 자동 점화 장치를 이용케 하여 흡연하게 하는 등의 사소한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수용자의 흡연권을 부정하여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에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측면이 있으며 수용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행형법 제1조 제3항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수용자의 흡연권 인정은 교도소 등의 질서유지의 합리적 목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

6) 한편 대법원은 “인간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가장 기본적 본질의 하나로 보고 있다. 현재 1997. 3. 27 선고 96 헌가 11

으므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⁷⁾

(2) 교정 심리적 관점

사회에서 각종 스트레스 등을 담배나 음주 등으로 해소시켜온 범죄자가 갑자기 구금되었을 때 생기는 구금스트레스 등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 공포 등 각종 정서적 반응을 보여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상 행동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흡연 경력을 가진 수용자에게 계속해서 흡연을 인정하면 구금스트레스 등을 적절히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교도소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흡연이나 음주로 해소해 온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되면 교도소 자체가 수형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기존의 스트레스 외에 구금스트레스가 생겨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교도소가 그가 사회에서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 사용한 흡연을 갑자기 부정하게 되어 그가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좌절감, 우울, 불안 등이 지속되어 우울 등이 심하게 되면 정신병 등의 이상행동이 생겨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좌절감 등은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각종 교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올바른 교정재 생산에 저해가 된다.

(3) 참작요소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흡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요소의 상징조작논리에 대항해야 한다. 첫째로 교정당국은 보안 등 교정업무의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그런 부수적 문제점들이 고객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본질적 문제 등에 대해 우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로 금연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 금연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교정 재의 생산기관인 교도소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생산도 헌법정신에 맞아야하므로 의료적 관점은 부수적 기준이지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고 가치분리적 입장에 서야한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부수적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금연을 유도하는 비강제적 방법의 사용과 금연자에게는 누진혜택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면 된다. 가령 회사 내의 직원들에게 흡연의 자유는 인정하되 금연자에게는 우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셋째로 금연하고 있는 수형자의 혐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분류와 수용의 과학화로 금연자들은 금연자들로만 혼거하도록 하고 흡연실의 설치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동시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용자나 징벌자 등에게는 흡연권을 제한해야 한다.

넷째로 국가 권력이나 대중매체들이 쏘아올린 상징신호에 세뇌되어 그 신호에 따라 알게

모르게 습득된 결과를 마치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무조건 국가 또는 특정집단의 가치를 인정하는 미시파시즘(micro facism) 경향이 강한 한국 대중들의 응보주의적 성향(이는 특히 사형제 폐지에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서 알 수 있다)이 수용자의 흡연권 인정에 결림돌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계몽운동과 함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여론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의 기초로 삼아 관료적, 정치적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어적 정책의지를 구축하려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상징조작의 모순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4. 사형제의 필요성 및 사형수 등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필요성

사건으로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는 바, 먼저 폐지론자의 논리에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사형의 정치적 악용 우려는 사상범에 대한 사형조항을 폐지하면 되고 오편의 문제는 주요증거의 증명력 등에 다툼이 있으면 사형집행을 미루는 안전판을 두면 된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수도 교화가 필요하다면서 종신형을 주장하나 이는 교정의 기본을 모르는 주장이다.

교화란 사회적 개념이므로 아무리 교화가 되어도 평생을 감옥에서 지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즉, 교화란 출소하여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 사회적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사형제의 위하력이 없다는 것을 특정국가의 통계를 들어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사형제도의 존재 외에도 나라마다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인구, 성별, 정치, 경제, 인종, 역사 등)가 있으며 이들 간에는 국가마다 변수들 간의 상호 억지력적인 역동적 요소가 다르게 작용하여 중범죄률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마치 사형제가 있어도 중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일부 통계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화하는 교묘한 논리를 펴고 있다.

원리는 간단하며 형사정책에서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므로 사형제도의 존재는 잠재적 범죄인에게 위하력(검)을 주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형제의 위하력을 살리면서도 사형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벌 등에 있는 많은 사형조항을 삭제하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수많은 시민을 죽이는 내란죄의 수괴 등에게는 사형을 적용해야 다시는 광주학살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최소한의 사형조항은 두어야 한다.

동시에 흥악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사회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가령 15년 이상)이 경과하면 감형하도록 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사형수 자신이 집행을 진실로 간절히 원하면 집행하는 것이 사형수의 인권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사형폐지론자들은 온갖 상징적 조작(가령, 사형 집행국가는 야만국

7) 세계 대부분국가가 기본권의 하나로 흡연권을 인정하며 심지어 남미는 음주권도 수형자의 기본권으로(이탈리아, 스페인 등 포함) 인정한다. 천정환, 전개서, 6면 이하

가이고 사형 폐지국가는 인권국가라는 상징을 형성하고 조작)과 상징협박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바, 절대로 전문 행사정책문제를 감상적이거나 종교적, 정치적인 편협된 관점에서 해결해서는 안된다. 종교인들은 생명권은 오직 하느님에게 있다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서있어 그 본질적 한계가 있는 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교도소 등의 형벌제도가 필요없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제 존재 여부와 인권국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인권단체들은 사형 존속국은 야만국가라는 상징신호를 계속적으로 강렬하게 언론 등에 쏟아올려 이미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 관료들은 그런 상징조작에 세뇌되었고 이제 그런 상징조작이 진실인 것처럼 인지하게 되어 마치 우리나라라는 아직 인권국가가 아니라 고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사형폐지에 찬성하지 않으면 마치 비인권적, 비민주적 정치인으로 낙인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관료들은 폐지문제를 민주적 원리에 의하여 여론에 의해 결정하자고 하여 전문 정책문제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잘못되었다. 여론은 정치의 영역이지 과학이나 형사정책 등과 같은 전문분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은 전문 정책결정에서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다만 참고적이고 부수적 기준이 될 뿐이다.

따라서 전문 정책문제를 종교적 등 특정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상징성의 함정에서 국민들과 입법자는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형제도의 존폐라는 양적 접근보다는 이제 사형수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형수에게도 교도작업구간을 인정하고 성생활 및 흡연을 인정해야 하며 현재 기결수와 사형수 간에 행해지는 모든 차별(가령 사형수는 생필품을 스스로 구입해야 한다.)을 시정하고 사형수와 수형자에게도 헌법 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인정하여 빈곤자에게는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 등의 산업복지가 보장되고 기초노령연금(2008년 실시)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교정도 교정복지의 관점으로 이행하고 가장 외롭고 불우한 수용자에게 최우선의 혜택을 주는 차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교정행정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도소는 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범죄와 무관한 국빈자가 입소하는 것을 막는 방안과 부유한 수용자에게는 교정경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London King's college, 2002.

중앙선관위, 외국선거제도비교집, 2005-2006.

천정환, 교정학, 대왕사, 2005.

천정환, 교정복지학, 대왕사, 2006.

천정환, 교정인권복지론, 푸른북, 2006.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형수들을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사형수들이 감방에서 사형장까지 오는 길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길이다. 이 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감방 안에 앉았다가 ‘00번 나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발버둥을 친다. 쇠창살을 불들고는 ‘나는 안 가! 못 가! 살고 싶어, 죽기 싫어!’하며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수갑을 채워서 들고서라도 목을 매달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 울며, 부르며 그 길을 온다. 창틀 사이에 조그만 둘풀이 피어 있어도 그곳에 코를 대고 폐부가 찢어지도록 풀냄새를 맡는 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쪽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고 땅 한 번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수갑을 차고 끌려오면서도 생의 마지막 발걸음들이 두렵고 아쉬워 그냥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보폭이 5cm도 될까 말까 하게 발걸음을 펴다. 그렇게 오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담당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라면 다시 신발을 주우러 또 돌아온다. 그만큼 더 살겠다고. 또 다시 신발 있는 테로 돌아와서 신발을 신고 돌아서고 한 발자국이라도 벌며 1분, 1초라도 좀 더 살아보고 싶었던 생명에 대한 철학적 애착이다. 죽음의 길에서 보여주는 사형수들의 모습이다.

사형수들은 자신이 지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 긴 지하복도를 걸어서 자신이 목매달려 죽을 지하실 밑을 통과한다. 사형장 밑을 통과하면 바로 문이 있다. 사형수들은 계단을 올라 문을 밀고 집행하는 곳에 앉게 된다. 그게 사형장이다. 나도 그 때 사형장은 처음 와 본 것이다. 처음 들어오니 얼마나 삭막하던지.... 맷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옮아 죽였는지 기름이 묻은 듯 반질반질했다. 그것을 보니 비위가 확 뒤틀렸다. 매스꺼움을 느꼈다. 오늘 이곳에서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 믿음의 형제들, 불쌍한 사형수들이라는 인간적인 애처로움과 서러움이 계속 베어 나왔다. <사형장이 ‘하늘가는 밝은 길’로 중에서>

사형집행형장에 함께 했던 교도관의 증언이다. 과연 나에게 이런 사형집행 명령이 내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 사형장에서 사형집행과정을 지켜보고 죽어가는 사형수를 직접 본다는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하기 싫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곳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고 직접 살인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살인인 것이다. 비참하고 충격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의 심성이 황폐되기 쉽다. 바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형집행 장이다.

1992년에 미국 정신분석학자 몇 명이 의미 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 199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사형집행 현장에 입회하여 취재한 기자 18명을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목격하는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연구결과 사형집행을 참관한 기자 18명 중 대부분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보였다. 기자들이 보인 심리적 문제를 보통 ‘해리(전환)장애’라고 말한다. 해리장애는 뇌의 이상 없이 심리적 원인으로 기억상실이 발생하는 장애이다. 이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갑자기 회생시키지 못하는 장애인데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어, 심적 자극을 준 부분을 선택적으로 또는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로는 평생 동안 일정기간에 대한 기억상실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보호본능, 다른 말로 하면 ‘정신방어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과 결부된 감정은 의식 밖으로 밀어내 감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확보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다.

사형집행을 본 기자들은 그것을 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분리시켜 사형집행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한 기억을 없애 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그런 현상이 사형집행이라는 그 사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렇듯 사형집행은 단순히 사형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인의 공범자로 만들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집행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집행형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 검사와 교도관, 성직자들은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게 된다. 곧 그들의 인격이 법 앞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주장한다.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인의 현장에 대한 끔찍함은 기억하지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씩 죽이는 형장의 끔찍함은 기억하지 못한다.

사형집행형장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의 피해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살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형수의 인권

1) 사형수에게도 인권은 있다.

사형집행 형장에서 가장 크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은 바로 사형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인권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권은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천부적인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권이 가장 크게 훼손당하는 것은 생명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생명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 공평하지 못한 법에 의해 사형수가 양산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사형수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형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좋은 집안의 자녀였더라면,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시기였다면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사형수는 범행 당시 어떤 사람이었고, 왜 잔혹한 범행을 하게 됐을까.’를 심층 취재한 적이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사형수 63명을 참사 취재한 결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돈 부족에 허덕였고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범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7%였고 복수심 때문이 30%였다. (국민일보 2006.2.19)

사형수들 대부분은 범행 전에 사회의 약자들이었다. 또한 재판 중에도 법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형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법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두 번 죽는 사형수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교수형 집행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형수를 두 번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회고록에도 나오듯이 사형집행 때 교수기가 고장이나 다시 집행 한 경우도 있었다.

“그는 천주교묘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쿵”하는 소리가 쿵진을 때렸다. 그 소리는 심장에 꽂히는 비수(匕首)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가 목에 밧줄을 걸고 정말 편안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무로 된 낡은 교수기(絞首機)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 이었다. 소장은 즉시 ‘사형집행 계속!’ 명령을 내렸다. 젊은 사람을 두 번 죽여야 하는 상황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난 애처로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간수들이 사형대를 고치는 것을 태연스레 보고 있던 월갑이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반시간쯤 후면 천당에 가 있겠네요.’라며 날 위로하는 듯 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두 번째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사형수 최월갑과 회망원’ 중에서)

교수형은 신체에 손상이 없고 피도 그다지 나오지 않으니까 잔학하지 않고 교도관의 저항감도 그다지 없다는 것이 집행하는 측의 입장이다. 외국에서는 사형수의 고통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집행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형을 피하고 있다. 외견상의 손상 유무나 잔학성보다도 본인의 고통을 가급적 없앤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교수형이 사망하기까지 가장 긴 시간을 요한다면 교수형이야말로 가장 잔학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형집행이든 사형집행은 가장 잔인한 형벌인 것이다.

2. 교도관의 인권

사형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심정이나 정신적 고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앞의 글에서도 나왔듯이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통보해야 하는 교도관의 심적 고통. 그리고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 사형수를 방에서 끌어내 사형장까지 함께 동행해야 한다. 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저항하는 사형수를 역지로 끌고 형장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교도관의 역할은 바로 저승사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형장에서 사형수의 몸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빗줄을 목에 걸고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고 죽음을 확인해야 하는 교도관의 업무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 흉악한 범죄가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사리진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형집행에 가담해야 했던 교도관을 오히려 손가락질 한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사형을 주장하고, 법관은 흉악범을 국민감정 혹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교도관에게 명령하여 집행한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무서운 업무만 교도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앤린은 “사형은 지지하고 있으면서 왜 집행인은 미워하는가?” “사형이 있으면 집행인이 필요하며, 누군가 이 업무를 ‘의무’로 행해야 하는데, 왜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만 미워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인이 임신 중의 집행, 저항하는 수형자의 목에 로프를 감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여야 하는 모순, 교도관과 사형수가 인간적으로 교류한 이후의 처형,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인간을 냉혹하게 죽여야 하는 현실. 이 모두가 교도관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사형집행이 끝났을 때, 참여한 교도관들은 눈에 핏발이 서는 등 제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서둘러 구치소 근처의 술집으로 몰려가 깡소주를 봄새도록 폐마신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또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죽어간 사형수들은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정이 들었던 얼굴들이다. 집행 후 어느 교도관은 집행 뒤의 소감을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거죠」라고 했다.

교도관은 죄를 저지른 자를 바로잡아(矯) 올바르게(正) 인도하는 직원이며, 교도소는 바로잡아(矯) 인도하는(導)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소(교도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직원(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끔(사형) 강요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교정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악마의 길에 빠진 자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같은 손으로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3. 종교인들의 인권

사형수들은 형이 확정되면서 거의 종교에 귀의한다. 그리고 성직자들과 종교위원들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된다.

샬트르성 바오로수녀회 조성애 수녀는, 형이 확정되고 집행될 때까지 5, 6년간 사형수들의 수형생활과 집행 순간을 지켜보면 누구라도 사형제도의 비정함에 진저리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초기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드

러낸다. 시간이 좀 흐르면 구치소를 드나드는 종교인들을 통해 종교에 귀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여전히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 때때로 자살충동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며 재소자들을 전도하기도 한다. 이렇듯 변화되어가는 사형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안겨준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과 사형수들과 관계에서 사형제도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사형수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기 위해, 또 사형수들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형집행 형장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제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지만 갈등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모순에 심적인 고통이 큰 것이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죽어가는 사형수를 볼 때는 자신의 무력감과 더불어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안성농협 카빈총 강도 살인 사건 범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어느 사형수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 청구를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 서울변협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이던 중 집행되자 "오페란 판·검사와 위증을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 처형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사형수들을 대할 때만 해도 사형이 필요악이거나 막연히 생각했던 문장식 목사는 오페란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 목사님은 특히 87년 4대독자 사형수(강도살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치며 처형되자 노모가 이듬해 구치소 뒷산에서 음독자살하는 등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형수가 보낸 편지 중에도 서로가 사형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

"신부님!

마지막 코스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지요?

솔직히 저도 스산한 형장에서 신부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음산한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한 달 뒤 미사를 약속하고 헤어지는 발걸음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라니요!"

온갖 정성과 사랑을 통해 변화된 형제들을 형장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형수나 사형수 교정 교회를 위해 함께 했던 성직자, 수도자, 봉사자들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 내가 함께 했던 사형수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교정교회를 담당하고 신앙으로 인도했던 종교인이지만 마지막 코스인 형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면할 수 없고, 그 고통의 길에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 성직자들은 여러 죽음을 목격하고 체험하지만 며칠 전 까지 밝게 웃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했던 사형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것도 인위적으로 죽이는 현장을 보고 초연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것도 하루에 여러 명이 집행되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신부님들 중에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심신이 황폐해지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신부님은 보름정도 제대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형장에서 죽어간 형제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집행 형장에서 사형수들을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집행의 끔찍함과 허탈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심신의 피곤을 넘어서 인격의

파괴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종교인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4. 살해 피해자의 인권

사형 존치론자들은 사형존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의 감정을 이야기 한다.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가해자를 사형시켜야 된다는 논리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하기보다는 범인을 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과연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의 감정이 풀릴 것인가. 그리고 살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인가.

범죄로 인해 가족이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또 당하게 된다. 살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 외에도 더 큰 아픔을 함께 겪어야 했다. 살해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가족들이 범인으로 의심받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사건 현장을 가족들 손으로 치워야 하는 아픔과 함께 가족 중 한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하고 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했다고 했다. 마음껏 얘기할 곳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 혼자 울며 다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목숨은 건졌지만 다친 자녀들에게 대한 걱정과 함께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두려움이 피해자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 잠깐 등장하고는 뒷전으로 사라지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사형 집행으로 역할을 끝내는 국가, 필요할 때만 피해자 감정 운운하는 존치론자,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언론. 이런 무책임한 현상이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슬픔과 절망을 체험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을 키우는 환경을 제공하기 쉽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해아리고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쇼크를 치료해 주고, 유자녀의 학비를 감면해 주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거의 없고 피해자 가족은 그 아픔을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살해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해자를 사형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게 노모와 부인, 4대독자를 잃은 고정원씨는 유영철을 용서했다. 고정원씨는 사건 직후 심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가장으로써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 등

으로 죽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죽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고 죽자 라는 소리가 들렸고 유영철을 용서해 주었다. 그랬더니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함께 화해와 용서를 호소하며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2주간 '희망여행'을 통해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희망여행'에 고정원씨도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화해와 용서를 통해 얻어지는 치유를 함께 체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과 아픔, 치열한 절규를 마음껏 펼쳐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필요하다. 자조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잘 승화시켜 고통에서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단체, 종교단체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신과 갈등의 사회에 용서와 화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신의 아픔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집행한 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분류에 따라 올 12월 30일이면 우리나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이미 세계 131개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다. 또한 EU는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국 가라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에 서명을 하여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에 놓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특별법에는 사형제 대신에 종신형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범죄는 엄하게 처벌을 하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만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사형제 폐지는 생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이다. 어릴 때부터 잘못한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 커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유무를 판단한다면 그보다 무서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예가 바로 유영철과 정남 규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의 생명 만큼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커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가 된다면 국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문화가 싹트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폐지운동은 사형수의 형 집행을 막자는 것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영국의 Storybook Dads(Moms) Program을 중심으로 -

박 영숙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교도소 수용기간을 단순한 처벌 기간이 아닌 재사회화를 시키는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형자를 단순히 격리하거나 구금하는 방식으로부터 교화나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출소 후 사회재적응률은 높아질 것이고 재범률은 낮아질 것이다.

수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지 세력이자 지원 세력은 바로 가족이다. 수형자가 수용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와 자신을 반겨줄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만으로도 수형자에게 큰 힘이 되며 희망이 된다. 이는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소 수용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도소 수용기간 중에 가족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도록 하는 일은 교정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수형자들은 교도소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면 그 가족들은 범죄인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수치심, 증오심, 소외감 등을 느끼며 범죄의 숨겨진 희생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자와 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게 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심, 불신감만 쌓이게 되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심지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가족이 해체되면 수형자는 출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어 사회에 재적응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다시 재범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보안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여도 가족과 접촉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형자가 출소 후에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가족이 해체된다면 사회 재적응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교정복지의 방향은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형자와 그 가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교정복지는 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소홀해 왔다. 그 이유는 수형자에 대한 처벌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고, 가족주의가 강하여 가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수형자의 가족 문제 역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있어서 가족의 존재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가족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

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정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형자의 가족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만남의 기회나 접촉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며 특히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용기간 중 수형자의 최대 관심사는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형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형자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는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이는 수형자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로 자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수형자의 가족관계 중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영국의 SBD(M)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수형자와 가족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수형자의 현황

수형자는 넓은 의미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모든 자를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구금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즉,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징역장 구치명령을 받는 자를 말한다.⁸⁾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화하는 시설로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가 있는데 다음의 <표 1>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형자의 수용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형자의 수용 인원(1986년~2005년)

구분 년도	1일 평균 수용되는 수형자 수	구분 년도	1일 평균 수용되는 수형자 수
1986	30,933	1996	32,848
1987	30,426	1997	33,123
1988	29,102	1998	35,125
1989	27,171	1999	38,364
1990	28,267	2000	37,120
1991	30,049	2001	37,036
1992	31,169	2002	37,111

8) 미결수용자(형법 제1조의 1)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는 자로 수형자와는 구별된다.

1993	32,054	2003	36,458
1994	33,207	2004	34,609
1995	32,895	2005	32,933

주 : 법무부 교정국 통계.

<표 1>을 보면, 1일 평균 수형자의 수용인원은 1986년에 30,933명이었으며 그 후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1999년에는 38,364명으로 최다인원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2,933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9년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IMF의 영향으로 실업, 경제구조의 혼란, 가정경제의 악화, 경기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문제가 범죄 문제로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의 <표 2>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년도별 수형자의 성별 분포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수형자의 성별 인원(1996년~2005년)

구분 년도	계	남자	여자	여성의 비율
1996	32,939	31,792	1,147	3.6
1997	34,373	33,381	1,172	3.4
1998	36,811	35,396	1,415	3.8
1999	38,737	37,218	1,519	3.9
2000	38,224	36,874	1,350	3.5
2001	38,521	37,162	1,359	3.5
2002	37,646	36,145	1,501	4.0
2003	37,692	36,061	1,631	4.3
2004	35,627	33,813	1,814	5.1
2005	32,969	31,442	1,527	4.6

주 : 법무부 교정국 통계.

<표 2>를 보면, 남자 수형자의 수가 여성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수형자의 수 중에서 남자의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며 여자 수형자의 구성비는 3~5% 대에 불과하다. 즉, 여성 수형자의 구성비는 1996년에 3.6%를 기록한 이후 2001년까지 3%대에서 증감을 보이다 2002년에 4%를 기록하였고, 2004년에는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수형자의 구성비는 비록 적지만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발전과 여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여성 수형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표 3>은 수형자의 연령별 분포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을 보면,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25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70% 이상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996년에 10,897명, 2001년에는 12,434명, 2005년에는 10,423명으로 각각 전체의 33%, 32.3%, 32.6%에 이르는 등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범죄백서, 2006).

이러한 연령 분포를 보면 수형자 중 기혼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 자녀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를 수형자 중 30세 이상과 50세미만을 합하여도 약 2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자녀를 1명 내지 2명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면, 약 2만명에서 4만명의

수형자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 수형자의 연령별 인원(1996년~2005년)

연도 연령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2,939	34,373	36,811	38,737	38,224	38,521	37,646	37,692	35,627	32,969
16세미만	5	18	10	10	2	20	3	4	2	0
18세 "	222	298	299	208	143	95	70	66	32	29
20세 "	969	1,082	1,276	1,143	901	773	541	525	324	201
25세 "	6,481	6,638	6,985	7,092	7,007	6,348	5,568	5,515	4,637	3,770
25세이상	6,436	6,557	6,643	6,495	6,169	6,176	5,971	5,845	4,868	4,376
30세 "	10,897	11,089	12,013	12,290	12,353	12,434	12,217	11,987	11,581	10,423
40세 "	5,489	6,038	6,821	8,125	8,246	9,146	9,416	9,755	9,909	9,471
50세 "	1,901	2,075	2,190	2,688	2,667	2,699	2,982	3,088	3,339	3,667
60세 "	539	578	574	686	736	830	878	907	935	1,032

주 : 법무부 교정국 통계.

2. 수형자 가족관계의 중요성

1) 구금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

수형자들은 자신의 구금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가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구금 사실을 숨기려고 자녀와의 소식을 스스로 단절하기도 하는가 하면, 자녀와 연결되는 것에 집착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다(Stanton, 1980).

구금 기간 동안 자녀는 수형자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며, 대다수가 출소 후에 자녀와의 재결합을 희망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이러한 애착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양육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와의 재결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Clark, 1995).

또한 구금으로 인하여 수형자는 가족이나 자녀와 멀어져 지내게 됨으로써 주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특히 자녀와의 분리로 인하여 수형자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자신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에 우울해 하고 불안해 하게 되는데 이는 수용 생활 적응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수형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남성 수형자는 수용기간 동안에 아내가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 수형자의 경우 대부분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용 후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며 이혼 등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배우자나 친척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여성 수형자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Penny Leapheart, 1997)⁹⁾.

9) 남성 수형자 자녀의 70%가 접견을 오는 반면 여성 수형자 자녀의 19%만이 접견을 오고 있으며, 남성 수형자 자녀 중 61%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반면, 여성 수형자 자녀들의 26%가 일차적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생

수형자가 구금 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기는 자녀와의 틈(gap)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모와 멀어져 사는 것에 적응이 된 자녀들은 부모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그 전보다는 부모를 덜 찾게 된다. 때로는 부모가 전과자라는 것에 대해 거부하거나 조부모 등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수형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수형자들은 구금 사실을 자녀에게 알릴 것인가 숨길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 자녀와 이별로 인한 불안감, 자녀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를 경험하게 되며 무력감에 휩싸인 채 느끼게 되는 죄책감으로 피로워하게 되는데 이러한 죄책감은 출소 후에도 계속 되게 된다(Phillis J. Baunach, 1982).

2) 구금이 수형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이 어떠한 결함으로 인하여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가족의 구성원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 좌절,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수형자 가족들은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의 구속으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겪고 있다.

수형자 가족들은 수치심과 수형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정부의 정책 또한 수형자 가족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어 옴으로써 이들 수형자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 방치되어 왔다(Hostetter & Jannah, 1993).

자녀가 있는 수형자들은 수용되기 전에 90%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신연희, 2002). 이는 부모로서 자녀의 부양이나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 구금으로 인하여 부모와 멀어져 살게 되면 자녀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구금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가정이었을 경우에도 심각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편이 구금된 경우 부인이 남편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하고 자녀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배려를 할 수 없게 되고 자녀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다. 이러한 수형자 가정의 스트레스는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형자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눈초리에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바꾸어야 한다. 가족에게 주어지는 간접적인 낙인효과는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수형자 자녀들이 겪게 될 고통은 제2차적인 간접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제2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나칠, 1992).

그러나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자녀들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탓에 정서적 손상을 겪게 되며, 거주지나 학교의 이전 또는 양육자의 변경 등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구금 후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보면(신연희, 2002), 대부분 수형자의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그 중 여성 수형자의 경우는 35.6%에 불과하지만 남성 수형자의 경우는 60.2%로 나타났다. 남자 수형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그의 어머니와 지내게 되지만 여성 수형자의 경우 배우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혼 등의 요구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배우자와 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정서적 문제 및 학업 성취력이 떨어지고 심하게는 문제행동에 이르기도 한다(Hostetter & Jinnah, 1993).

부모의 구금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 가족구조,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버지니아 청소년 위원회는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0-18세 자녀들이 그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을 성취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Johnston은 아이들이 부모의 범죄, 체포, 구금에 직면하게 되면 발달 상의 문제를 나타낸다며 보고하였다. 0-2세의 아동들은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격리에 의해 부모와 아이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관계에 손상을 입게 되고, 2-6세 아동들은 격리 불안, 발달 상의 퇴보, 발달 동기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며, 7-10세의 아동들은 발달상 퇴행적이며 완전한 자아관념을 가지지 못함을 입증하였다. 11-14세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제지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행동 상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점들도 있다.

또한 Glueck은 비행 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범죄자일 확률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비행의 가능성은 부모의 구금으로 인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감시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았다(이상현, 2000).

Stanton(1980)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구속되어 있는 자녀들은 대개 학업성취도가 낮고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양쪽 부모 모두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미국 청소년국과 비행방지국의 1995년 조사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West와 Farrington은 부모의 범죄성과 아동의 장래 비행가능성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영국 아동들의 조사연구에서 비행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Penney Leapheart, 1997).

수형자의 불우했던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양육자의 부재, 경제적 궁핍, 여기에 범죄자라는 사회의 낙인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가질 수 없다. 자녀들은 부모의 구금으로 인하여 불우한 환경을 물려받게 된다면 부모의 대를 이어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녀들은 비행의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수형자 대다수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모, 편부 출하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으며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정환경이 부모의 구금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구금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충격을 주며 이러한 충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구금으로 받는 상실감을 어린이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죽음과 다르게 부모의 구금은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동을 한 부모의 아이들은 부모의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들도 부모의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사회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부재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지역사회, 동료집단으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기도 한다(Temin Engel Crolyn, 2001).

3) 수형자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선진국에서는 가족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영향을 주고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 성원들이 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해준다.

둘째, 수형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셋째, 수형자는 가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수용생활의 만족을 높이고 출소 후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C. F. Hairston, 1991).

가족과의 접촉이 수형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는 구금되어 있는 부모와의 접견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K. A. Casey, 1993). 그러나 구금기간 동안의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수형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Richards(1978)는 장기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수형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심리적 건강과 외부인과의 접촉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었다. 즉, 외부인과의 접촉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수들에게 수용생활에서의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졌던 수형자들은 출소 후 사회 재적응 효과가 높아 재범률도 적다. 이러한 주장들은 Ohlin(1954), Fishman & Cassin(1981), Adams & Fischer(1976), Hower & AcDonald(1982) 등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Ohlin(1954)의 구금 중에 가족과의 접촉과 가석방 성공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가족과의 관계를 접견을 통하여 유지하다가 출소한 가석방자의 71%가 가석방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과 접견을 하지 않았던 가석방자는 34%만이 가석방기간 동안에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금기간 동안 가족과의 관계유지가 출소 후의 재범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shman & Cassin(1981)의 연구에서도 구속기간 동안 자녀들의 방문을 많이 받은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에 자녀와 재결합하는데 문제를 적게 겪으며 가석방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고 하였다.

Adams & Fischer(1976)는 하와이주의 주교도소에서 출소한 124명의 남자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외부인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출소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 또는 가석방 규칙위반으로 재입소한 비율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출소 후 2년 이내에 재입소한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구금 중에 서신과 접견의 횟수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구금기간 동안 외부인과의 접촉정도가 출소 후 재범여부에 일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ower & AcDonald(1982)의 연구 역시 구금기간동안 가족과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출소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뉴욕의 한 민간회사에 의해 운영되었던 가족과의 재결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540명의 출소자들의 재입소율은 4~20%로서 당시의 뉴욕 전체 출소자들의 재입소율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낮았다고 한다.

가족은 수형자 및 출소자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논의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수형자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석방의 성공적인 완성 내지는 수용생활 중에 규율 위반행위가 없거나 처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Harm, 1999), 출소 후 적응기간의 정서적·재정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출소자가 이상과 현실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안내할 수 있는 역할도 가족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Mustin, 1987).

3. 수형자의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현황

현재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귀휴, 가족 만남의 집, 장소변경접견, 가족만남의 날, 서신, 가족캠프 등이 있다.

1) 귀휴제도

귀휴제도는 교정시설 내에서 일정기간 복역한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 또는 그 감독관청의 권한으로 일정기간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 내지 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귀휴제도는 일정한 조건 하에 수형자를 사회에 내보내어 생활설계의 준비, 가족과의 관계유지, 새로운 환경적응 등을 통하여 수형자가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촉진시켜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1999년 12월 28일 행형법 개정으로 직계가족사망, 자녀혼례의 경우에는 특별 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귀휴를 크게 확대하였다. 귀휴 실시현황은 1962년 최초 시행 이후,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6년 10월 31일 현재 18,689명에게 실시되었는데 그 중 위반자는 2명에 불과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표 4> 귀휴 실시 현황

연도	인원	위반자	연도	인원	위반자
1991	456	0	1999	483	0
1992	245	0	2000	555	0
1993	352	0	2001	828	0
1994	307	0	2002	932	0
1995	157	0	2003	1,035	0
1996	175	0	2004	1,070	0
1997	206	0	2005	1,123	0
1998	330	1	2006	1,090	

2) 가족 만남의 집

가족접견제도는 부부접견제도를 확대한 개념이다. 부부접견제도는 배우자가 있는 수형자에게 배우자와의 완전한 부부적 접견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접견기간 중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일 또는 상당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접견의 한 형태로서 부부 접견 시에는 직원의 입회를 생략하고 그 접견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부부 간의 애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에 처음 도입하여 부부접견제도를 더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가족접견 즉 가족만남의 집이라고 하여 실시하였다. 가족만남의 집이라 함은 교도소 등의 외부에 별도의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부부 간의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오랫동안 소원했던 부부 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가옥을 말한다.

1999년 6월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까지 2,292명에게 실시되었다.

<표 5> 가족만남의 집 이용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136	265	252	253	313	373	373	327

이 제도로 인해 오히려 성적 긴장감이 고조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지만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 접견으로 확대 실시하여 부부 간의 성적 문제, 수형자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나 일종의 보상으로서 수형자 관리의 자력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3) 장소변경접견

2006년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수형자와 그 가족 간에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허용하던 접견 방법을 교도관이 입회하는 조건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누진계급 1급인 모범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월1회 예약 접수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상반기까지 70세 이상 고령수형자와 20세 미만의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경주 노인 전담 교도소와장애인 개방시설 수형자, 외부 통근 추억 외국인 수형자에게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4) 가족만남의 날

수형자가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등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가족만남의 날은 수형자 합동접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교도소 내 특별한 구역에서 주로 모범 수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합동접견하는 것으로 일반접견보다는 더 자유롭고 더 오랜기간 동안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들에

게 호응이 좋다. 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1993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93,349명에게 실시되었다.

가족만남의 날의 시행 시기는 소장이 설날, 어버이날, 중추절 등 수형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교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에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은 수형자의 친족 중에서 5명 이내로 정한다. 다만, 무연고 수형자는 자매결연자 등 후원자 중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장의 질서유지 및 교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접견 가족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교정시설 외부에서 반입되는 음용수와 주류를 제외하고 가족이 준비한 음식물을 수형자와 함께 취식하게 하고 있다.

<표 6> 가족만남의 날 행사 현황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2,904	3,759	5,752	7,325	7,633	8,573	8,164	9,719	9,973	10,082	9,931

5) 일반접견

접견이라 함은 수형자와 친족 등 사회 일반인과의 면접 교담을 말한다.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과 만나 가사상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려는 데서 인정된다. 수형자의 접견은 교화상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친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특히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허가되고 있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회복에 있어서 또는 사회와의 외부교통에 대표적인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접견을 제한이 가능하고 증가할 수도 있다.¹⁰⁾ 또한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하게 할 수 있다.¹¹⁾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접견 때는 중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실에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날낱이 기록해 왔으나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도관 입회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의 185개 접견실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은 채 접견할 수 있는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 8월부터 기관수형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접견실을 강화유리로 완전 분리하여 마이크를 통해 대화하도록 하고 접견실마다 영상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접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06년 말까지는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추가 도입하고 2007년 말까지 대구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2008년 6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법률신문, 2006년 7월 24일자).

또한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기존의 화상접견제도를 보완해 가정 내에서 인터넷이나 화상전화기를 통해 수형자와의 접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도 개발, 2008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http://www.bsprism.com>).

6) 서신

서신이라 함은 용지 상에 표현한 의사표시의 연락이다. 이로써 원거리 간에 의사연락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개 교정시설 내의 수형자와 외부와의 교통은 접견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가족들과의 교통은 서신이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횟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접견은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상 친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특히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허가되고 있어 외부와의 교통에 있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가족 캠프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어머니의 구속으로 인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반면에 어린 자녀를 두고 구속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수형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¹²⁾를 통한 가족관계를 회복시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귀휴 요건을 갖춘 어머니 수형자 8명과 그들의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2박3일 기간으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흥인연수원에서 "여성 수형자 가족캠프"를 실시하였다.

먼저 캠프에 앞서 어머니 수형자들에게 캠프 2일 전에 미리 일주일간의 귀휴를 보내어 가족 캠프 전 후에 가족들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였다. 이번 가족 캠프에서는 자녀와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효율적인 대화를 통하여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엄마 되기, 소망나무 그리기, 마음 드러내기, 마음 나누기 등의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조절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돋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인 Stress Managements Music과 의미있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아동들의 정서적 함양을 도모하고 사회성 및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Happy Child Music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http://www.corrections.go.kr>).

또한 2007년 8월에는 부산교도소에서 남자 장기 수형자 10명과 아내, 자녀 등 33명이 참가하는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에서는 '당신(가족)이 소중한 이유'에 대한 수형자들의 발표 및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임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가정관계 전문가들이 수형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상담 및 조언을 해주는 자리도 마련하였다(법률신문 2007년 8월 16일자).

10) 접견 허용 횟수: 제4급 수형자는 매월 4회, 제3급 수형자는 매월 5회, 제2급 수형자는 매월 6회, 제1급 수형자는 수시로(하루 1회 원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

11) 누진계급 1급 수형자에 대하여 접견실 외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허가 할 수 있고 2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며 다만 처우상 필요시 2급, 3급 수형자에 대해서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9조.

12) 회복적 정의란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으로 범죄를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흠 또는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사사법 이론의 한 흐름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의문을 직접 품고 적절한 배상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 이론은 범죄로부터 비롯된 가해자,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델이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공동의 연대의식을 재생케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II. 영국의 사례: SBD(M):Storybook Dads(Mams) Program

영국의 SBD(M) 프로그램은 Storybook Dads(Mams) Program의 약자로서 수형자의 가족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형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교정복지 프로그램이다.

1. SBD(M) 프로그램의 필요성

영국 정부의 사회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의한 연구를 보면, 수형자와 그 가족의 절망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자녀는 약 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교도소에 있는 5명의 수형자 중 한명은 이혼하거나 격리된 생활로 인하여 부부가 헤어지게 되고, 또 45%나 되는 많은 수형자들은 격리된 구금생활로 인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수형자)을 만나기 위하여 먼거리를 와야만 하고 그나마 접견 횟수도 제한되어 있다. 수형자들은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이러한 바람을 어렵게 하고 있다(McHugh, 2006).

인간은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행복하다. 그러나 수형자들은 가족과 면회하는 동안에 그 곳에 놓여있는 의자를 치울 수 없어서 자녀들과 마음껏 놀아줄 수 없고 또 너무 시끄러워 전화로 이야기 하는 것도 어렵다.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들 중의 30%는 5년 후에 자녀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리고 특히 수형자의 경우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

수형자들은 종종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미지를 잊혀지게 하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여자 수형자들의 경우 이러한 억압된 구금이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 특히 자녀들과 오래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는 장기 수형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Sharon Berry는 수형자와 그 가족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그들의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Storybook Dads(Mams) Program을 시작하였다.

Storybook Dads(Mams) Program은 수형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수형자가 그들의 자녀들이 잠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동화를 녹음한 이야기 CD를 자녀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형자들이 비록 교도소에 구금 중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NIACE, 2006).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비록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직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들 자녀의 삶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SBD(M)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CD는 수형자와 그 가족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도 한다. 그 CD는 수형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 CD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이제 막 말하기를 배우는 아주 어린 자녀를 둔 수형자의 경우 그

어린 자녀가 말하기를 배울 때 이 CD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수형자들의 자녀들은 범죄의 숨겨진 회생자로 소외감, 좌절심,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자라면 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때 SBD(M)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CD는 자녀들에게 큰 활력을 주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보고 싶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CD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항상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지내게 되는데 SBD(M)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제 만져 볼 수 있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Berry, 2006).

이 프로그램이 수형자들과 그 가족들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족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재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의 중요성과 SBD(M) 프로그램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제기되었다.

2. SBD(M)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

SBD(M)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Sharon Berry는 36세의 이혼녀로서 늦은 나이에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였다. 졸업 이후 그녀는 자진해서 Channings Wood의 Devon 교도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였다. 그녀는 그 곳에서 일하면서 중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McHugh, 2006).

Berry는 Channings Wood에 있는 동안 SBD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 거기서 작가인 수형자와 CD를 만들기 위해 라디오 편집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교육 교사로 더 많은 훈련받았고, 2002년에는 닉트무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 후 Berry는 낮에는 교사로 일하고 그 외 시간은 SBD를 위한 작업을 하였다. 그녀는 직접 수형자의 이야기를 녹음했고 저녁에 집에서 그녀의 컴퓨터로 그 파일들을 편집했다.

이러한 사실이 수형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 독립적인 자선단체 활동으로 SBD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3년까지 작은 편집실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前정부 관계자 Claudia Sturt를 설득하여 교도소의 한 건물 빙방으로 이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이 활동은 점점 확장되어 4명의 파트타임 직원과 2명의 자원봉사자, 편집과 사운드 프로덕션을 담당하는 훈련된 4명의 수형자를 두었다.

이들은 교도소의 수형자 교육시설에 있는 현대적 사무실로 옮겨 SBD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닉트무어 교도소 직원 중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 또한 놀라운 것은 Berry 와 두 직원은 수형자의 구금방을 포함하여 교도소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었다.

닉트무어는 한번에 600명의 수형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2000명 가량의 수형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이야기를 녹음해 왔다. SBD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서 대기자 명단에

오르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특별선물 녹음 CD를 만들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며, 생일 선물로도 인기가 좋다.

현재 SBD 프로그램은 교도소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Berry는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Scotland의 Cornton Vale 여자 교도소에서는 여자 수형자를 위하여 Storybook Mams Program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CD녹음을 하는 SBD(M)에 속하는 약 50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 곳에서 편집을 위해 CD를 녹음한 후 다크모아 사무실로 보내진다. SBD(M) 프로그램의 폭증하는 인기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Berry는 기부금을 거의 30만 파운드 이상 모금하였고 2008년까지 현재 상태로 이어진다면 자선기금만으로 충분히 자원이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Prison Service(정부 보조)로부터는 전혀 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3. SBD(M) 프로그램의 과정 및 현황

SBD(M) 프로그램은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교도소를 어떻게 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수형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 긴 시간동안 노력해 온 결과이다.

SBD(M) 프로그램은 2002년 Sharon Berry에 의해 시작된 이후 다크모아 교도소 중 그레이 건물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현재는 영국의 약 50여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2000여명의 수형자의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 CD를 제작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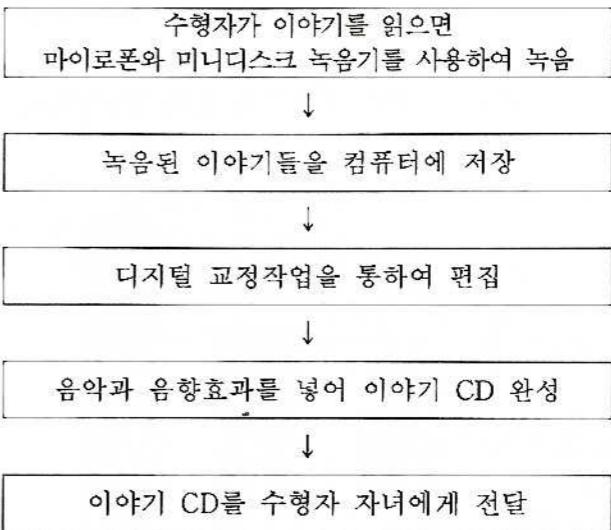
SBD(M) 프로그램의 Concept은 간단하다. 수형자들이 읽을 이야기를 선택해서 마이크로폰과 미니디스크 녹음기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녹음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폰과 미니디스크 녹음기 그리고 약간의 책들이 SBD(M)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도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녹음된 파일은 컴퓨터로 옮겨져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수형자들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발견하여 마지막 과정에서 편집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음악과 음향효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거친다(GSL, 2006).

SBD(M)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의 읽기 능력과 상관없이 설사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수형자라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다. CD의 편집과정을 통하여 실수들은 제거되고 동화구연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우 전문적이 되어서 자녀와 그 부모는 그 결과에 항상 깜짝 놀랄 정도이다. 디지털 편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전달된다(Community links, 2006).

수형자들은 이야기와 함께 자녀에게 보내는 Message도 같이 녹음하는데 이러한 이야기와 Message가 Tape이나 CD로 제작되는 것이다.

SBD(M) Program의 목적은 수형자들이 직접 녹음하여 제작한 CD공급을 통해 수형자와 자녀들이 더 친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이를 통하여 수형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고 자녀가 범죄에 빠지는 것과 가족해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SBD(M) Program의 과정>



다트모아 교도소에는 현재 6개의 편집국으로 이루어진 2개의 편집실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편집자로 훈련된 수형자가 활동하고 있다. 보통 10분에서 15분정도 분량의 동화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하는 데만 해도 2-3시간이 걸린다. 편집자로서의 수형자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 성실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며 어느 정도 예술적 재능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오디오 편집에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취득하게 되고 이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Sound and Audio 제작에 있어 매우 유용한 OCN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NHS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 2007).

다트모아 교도소는 2003년부터 다른 교도소에서 보내온 CD도 이곳에서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더 많은 수형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미니 디스크 녹음기와 마이크로폰만을 갖춘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이야기를 녹음한 후 다트모아 교도소의 편집국으로 보내오면 편집하여 CD에 담아서 다시 보내온 교도소로 보내게 된다.

처음에는 수형자 중에서 아빠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여성 수형자들도 그 대상이 되어 SBD 프로그램에서 SBM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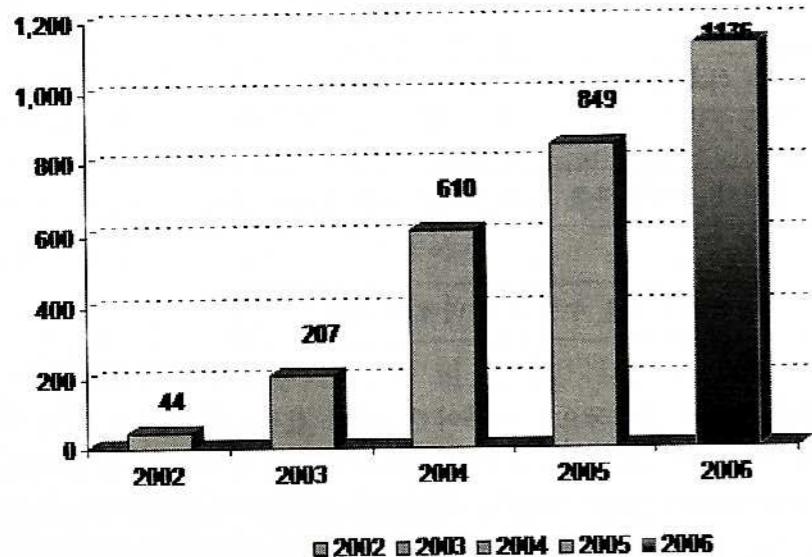
이야기를 녹음하는데 있어 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동화 읽기 기술, 동화 짓기 기술, 미디어 기술, IT기술 등 수형자들의 기술 교육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NHS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 2007).

이야기 책읽기 기술은 가장 중심이 되며 초보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창작문 예과정을 배워서 직접 동화를 쓰기도 한다. 또한 오디오 이야기 책을 만드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술까지도 배워서 참여하기도 한다.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부모의 CD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따라서 읽을 수 있어서 글을 알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지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Berry, 2006).

또한 다른 교육의 기회로서 더 풍부한 표현으로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드라마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가족유대관계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많은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은 자신의 이야기

를 쓰는 것에 용기를 얻고 원한다면 이야기 쓰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SBD(M) Program은 2006년 한 해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여러 곳의 새로운 교도소들이 참여하였는데, 다음의 그래프는 닉트모아에서 편집하고 만든 수형자들의 이야기 CD 현황이다.



4. SBD(M) 프로그램의 효과

2002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00명 이상의 수형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가족들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수형자와 그 가족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수형자와 그 가족들의 반응은 놀랄만 하다. 수형자와 그 가족 모두 SBD(M)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으며 제작된 CD를 통해서 대화가 풍부해지게 되었는데 CD가 서로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 이야기 거리가 제공되게 된 것이었다.

자녀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수형자들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되어 비록 교도소에 수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하였다.

또한 자녀들은 조부모나 친구 집에서 잘 때도 그 CD를 가지고 다닐 정도이며 그 자녀들이 주위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CD를 듣게 하고 심지어는 학교에 가져가서 반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수형자와 그 자녀들의 반응이다.

<수형자들의 반응>

“하길 잘한 것 같다. 음향 효과와 더불어 웃으며 스테레오 앞에서 있다.”

“나는 이 CD로 너무 행복해서 울고 싶었다. 그것은 나를 슬프게도 했지만 지금 나는 행복

하다.”

“나의 이야기 CD는 너무나 잘 편집되어 내 자신도 놀랍다고 생각한다. 너무 잘 나왔다.”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 기쁘다.”

“내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잠잘 때마다 그 CD를 듣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을 사랑한다.”

“내 자녀는 저 멀리 있다. 아내는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아이는 CD를 받았고 CD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이래 가장 유용한 것을 만들었다.”

<자녀들의 반응>

“나는 CD를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나의 반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그 CD 하나를 갖기를 원했다.”

“그 CD는 나를 위한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다. 나는 그것을 매일 밤 듣는다.”

“나는 CD 이야기에 있는 동물소리를 좋아한다. 그것은 너무 웃긴다.”

“나는 아빠를 그리워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교도소에 있는 아빠가 염려된다. 그러나 아빠는 CD를 통해서 행복하게 이야기한다. 그 CD는 나를 역시 행복하게 한다.”

“아빠는 나를 위해 CD를 만들었는데 제목은 ‘개구리왕자’이고 나의 남동생 CD는 ‘잭과 콩나무’이다. 그것들은 둘 다 너무 재미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크리스마스 때 또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

“나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좋다. 그 CD는 성우같은 목소리로 아빠 목소리 같지 않다. 나는 아빠가 또 다른 CD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SBD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수형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McHugh, 2006).

South Wales로 부터 온 34세 된 케리는 Devon에 있는 악명높은 중범 교소도인 Dartmoor 교도소에서 7년 3개월 선고 중 4년째 복역 중이다.

많은 아빠들같이 케리는 집에서 그녀의 딸 칼리에게 잠자기 전 침대에서 이야기를 읽어 주지 못하고 있다. 내일도 그 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가 딸에게 이야기를 직접 읽어 줄 수 있게 되려면 3년 더 지나야 될 것이다.

케리는 12살이 된 그의 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 먹은 다음부터 SBD Program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했다. 그는 딸 칼리가 잠자기 전 저녁마다 들을 수 있도록 완벽한 음악과 음향효과를 넣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전문적 수준의 CD로 만들었고 이 이야기를 현대 어린이 세대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케리는 “나는 딸과 매우 가까워졌고 그 CD로 인해서 딸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딸에게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 딸은 그 CD를 매우 좋아하여 일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듣고 있다. 그녀는 친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또한 “처음 1년은 내가 지방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매 주마다 딸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단 1번 본다. 그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캐리는 다프트무어와 국내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수형자들과 함께 그들의 자녀에게 활력을 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였다.

지난 해말에는 북쪽 지역 교정 시설(NRCF)에서 수형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SBD(M)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NRCF(Northern Region Corrections Facility) 프로그램 매니저 Stan Pilbrow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담긴 CD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형자들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자녀들은 아빠가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그 CD는 자녀들이 책을 읽는 것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게 될 것이고 수형자들 중 일부는 지금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며 또한 서로 서로를 격려해 주고 지도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수형자 및 그 자녀들의 반응과 사례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형자에게 미치는 효과>

1.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된다.
2. 부모로서 자녀들의 발달과 상상력을 위한 읽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3. 수형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향상되고 부모로서의 지위가 향상된다.
4.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
5. 수형자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행복해 한다.
6.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배움의 기회 예를 들면, 자녀양육, 문학, 창작문예 과정 등에 보다 적극적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
7. 창작 동화를 쓰는 작업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는 글쓰는 능력과 더불어 컴퓨터를 다룬으로써 IT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1. 비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는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두려움이 감소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3. 동화 이야기, 말하기에 대해 흥미와 집중력이 향상되고 상상력이 발달한다.
4. 원할 때 언제든지 부모의 목소리를 CD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특히 낙심하고 외로울 때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다.

IV. SBD(M) Program의 도입의 필요성 및 과제

1. 도입의 필요성

가족은 수형자의 지지 세력이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세력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에 사회에 재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돌아갈 가정이므로 교도소 구금기간 동안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정정책은 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수형자와 가족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해왔던 원인은 다음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수형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다보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둘째, 가족주의가 강하여 가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였고 국가에서도 이에 바탕을 두어 수형자의 가족 문제 역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수형자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수형자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형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있어서 가족의 존재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러거스 대학(the Rutgers University School)과 뉴저지 사회정의연구소(New Jersey Institute for social Justice)는 교도소 수용기간과 출소 후 사회복귀에 있어서의 가족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정당국이 구금질서의 확보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가족의 역할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개념을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Christian, Fishman, Cammett, Scott-Pickens, 2006).

가족 중에서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SBD(M)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은 여러 차원에서 제기해 볼 수 있다.

먼저 구금은 수형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족 간의 격리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외국에 갔다가거나 멀리 여행을 갔다가거나 하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SBD(M) 프로그램을 통하여 왜곡이 없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밝히고 이해하고 화해함으로써 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수형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들인데 이러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든 어느 교도소든 수형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 뿐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책감이 커다란 걱정 사항이다. 그러나 SBD(M) 프로그램의 수형자와 자녀 간의 이야기 CD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불안감과 자책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CD를 통해서나마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 유지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SBD(M) 프로그램은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가 담긴 CD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안을 받으며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만남의 기회나 접촉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은 집과 교정시설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자주 접촉한다는 것은 사실 상 어렵다.

특히 가족에 대하여 감정표현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상 접견 등의 대면을 통해 서로의 애정을 전달하기 어렵다. 또한 서신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SBD(M) 프로그램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이면서도 인간의 오감 중 청각을 이용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로서 가족관계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존재감을 자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도 SBD(M)의 CD는 원활 때면 언제든지 부모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범죄자인 부모를 처벌하는 시스템이 자녀까지 처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형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에 재적용하게 하는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Sharp F. Susan & Marcus Mendoza T. Susan, 2001). SBD(M)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자녀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친밀감을 강화시켜 부모와 자녀의 재결합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SBD(M) 프로그램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구속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탈선을 방지하고 수형자에게는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틈(gap)을 줄여 출소 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함으로써 사회 재적용률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재범을 방지하여 교정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2. 도입 과제

외국의 교정복지 프로그램인 SBD(M)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정서에 맞도록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SBD(M)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수형자의 가족들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자

의 가족이지만 마치 그 가족이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 당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가 범죄자라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자녀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부모의 구금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고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사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면 소외감과 증오심, 수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도 범죄로 인한 제2의 피해자가 되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여겨져 범죄로 인한 숨겨진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낙인 속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 댓가를 치루고 반성하여 사회에 재적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의 충격과 아픔,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SBD(M)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들은 SBD CD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학교에까지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듣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국 사회에서는 범죄자 가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만큼 부정적이지 않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수형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며 빨리 수용생활을 마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증오심,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출소 후에도 재적용하지 못하고 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그로 인해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때 SBD(M)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재정 확보 및 민간의 참여 유도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재원의 확보이다.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SBD(M)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SBD(M) 프로그램의 경우 처음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었고 초기의 장비는 작은 미니 녹음기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선 단체로 발전되면서 재원도 확대되어 SBD(M)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SBD(M)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은 먼저 민간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내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주의가 강하며 범죄자와 관련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각 주별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수형자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237개를 시행기관별로 살펴보면 약 168개(약 71%) 기관이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로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정부기관은 69개(29%)에 불과하였다(<http://www.nicic.org/services/special/women>).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민간 단체,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 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SBD(M)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녹음이나 동화 읽기 지도, 편집, CD 제작, CD 전달 등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중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담당해야 할 일이 있다. 녹음은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녹음기를 다룰 수 있으면 되고 CD 전달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화 읽기 지도나 편집, CD 제작 등은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동화 읽기 지도는 자녀들이 좀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화구연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물론 아빠나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동화 읽기에 아무런 기교나 기법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진지하게 동화를 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자녀를 좀 더 집중시키고 자녀가 흥미롭게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의성어나 의태어를 강조하는 등 어느 정도 동화 구연의 기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편집이나 CD 제작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갖춘 인력을 동원하려면 인건비 등 그 만큼의 재원이 들게 되며, 교정시설에서의 작업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 내지는 교정복지적인 마인드를 갖춘 자가 해야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데 단지 급여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SBD(M)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력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원봉사자들은 일차적으로 복지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해내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일 수 있고 재원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정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

SBD(M) 프로그램을 도입 실행하는데 있어서 교정담당 공무원의 의지도 필요하다. 어느 한 프로그램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교정시설의 선택에 의해서 실시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교정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며 영국의 경우에도 Dartmoor 교도소의 허락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SBD(M)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소음이 방지되는 별도의 장소 마련이나 안전을 위한

인원 배치, 시간 약속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번거로운 점들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예상하지 못하는 안전 사고의 발생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새로운 교정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의하는 사람들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여 수형자의 편에서 수형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극 도입 적용해 보려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교정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장이나 교정담당 공무원은 수형자의 교정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SBD(M)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적극 검토하여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보안 문제의 우선적 해결

교정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특성 상 보안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SBD(M)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야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과 녹음하는 사람 등에게 안전위협 등 교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상자를 너무 한정지으면 정작 필요한 수형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수형자로 적절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전 교육 등을 통해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계호 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교정시설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인력 부족은 다른 교정복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인원을 적정한 수준에서 증원시켜 교정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보안 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6) 수형자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SBD(M) 프로그램은 아빠 또는 엄마인 수형자가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동화 이야기를 녹음한 것을 CD로 제작하여 보내주게 된다. 그리고 자녀는 그 CD를 통해서 아빠 또는 엄마의 목소리를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며 부모에 대한 존재감과 사랑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지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수형자의 가족 중에는 부모가 계시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어 수형자 부모의 수는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으로서 SBD(M)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확대하여 적용시켜 볼 만 하다.

예를 들면 Storybook Sons(Daughters) Program이 되는 것이다. 즉, 수형자의 부모가 좋아하는 소설, 시, 수필 등을 수형자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CD로 제작한 후 부모에게 보내는 것이다. 수형자의 부모들도 수형자의 자녀 못지않게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기뻐할 것이다. 특히 고령으로 인하여 접견이 어려운 노부모들에게는 이야기 CD를 통해 자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더욱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교정복지 프로그램이자 효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효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다.

V. 결 론

가족은 수형자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세력이다. 수형자는 가족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범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있어서 가족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족 중에서도 수형자는 자녀와의 관계에 관심과 걱정이 큰 만큼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교도소 수용기간 동안 그 자녀와의 유대관계의 지속은 수형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또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는 수형자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SBD(M)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SBD(M) 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동화 이야기를 녹음하여 편집한 후 CD로 제작하여 자녀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형자는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수형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나아가서는 재사회화에 성공하고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형자 자녀들은 SBD(M) 프로그램의 CD를 통해 부모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소외감, 수치심, 증오심 등이 사라져 비행의 위험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SBD(M) 프로그램은 수형자에게는 자존감을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즉, 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확보 및 민간의 참여 유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교정담당 공무원의 의지, 보안 문제의 우선적 해결, 수형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수형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정부나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법무부와 교정기관, 입법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민간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철, 가출청소년의 가족문제 및 선도방향,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 법률신문, 2006년 7월 24일자
- 법률신문 2007년 8월 16일자
- 신연희, 기혼 여자 재소자에 관한 연구: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상현, 소년 비행학, 박영사, 2000.
- Adams & Fischer. J. The Effects of Prison Residents' Community Contacts on Recidivism Rates. Corrective and Social psychiatry and Journal of Behavioral Technology, Methods, and Therapy, 22, 1976.
- Berry, S. Prison Service Journal, Storybook Dads: Keeping Families in Touch, NUMB 165, 31-34, 2006.
- Casey, K. A. The Effect of Visitation on the Disciplinary Adjustment of Incarcerated Femal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Doctoral Dissertation, 1993.
- Clark, Judith. The Impact of the Prison Environment on Mothers. The Prison Journal 75(3), 1995.
- Christian, Johnna. Nancy Fishman. Ann Camment. Lori Scott-Pickens. Bring families in: Recommendations of the Incarceration, Reentry and the Family Roundtables. A Joint Project of the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and the New Jersey Institute for Social Justice, 2006.
- Community links, Letting the FUTURE in a celebration of innovative projec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06.
- Fishman, S. H. & Cassin, C. J. M. Services for Families of Offender: An Overview. U. 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1981.
- GSL, Global News for the men and women GSL, summer 2006.
- NIAC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Devon Project Helps Families Stay in Touch and wins National award, Press Release 3th Many 2006.
- Hairston, C. F.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Important to Whom and For What: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8(1), 1991. pp.87-104.
- Harm, N. J. Families and Re-Entry Process. Family & Corrections Network Report. Issue 21, 1999.
- Hostetter, E. C. & Jinnah, D. T. Research Summary: Families of Adult Prisoners. Prison Fellowship Ministries, 1993.
- Hower, J. F. & MacDonald, D. Maintaining Family Ties. Corrections Today, 8, 1982.
- Mustin, J. The Family: A Critical Factor for Corrections, Family and Corrections

- Network, 1987.
- McHugh, J. PUBLIC FINANCE -LONDON-, Inside story: Sharon Berry's innovative StoryBook Dads scheme gives fathers in prison an opportunity to stay in close personal contact with their children, 30-32, 2006.
- Ohlin, L. E. The Stability and Validity of Parole Experienc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cited in Holt, Norman & Donald Miller. 1972. Explorations in Inmate-Family Relationship. California: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January). 1954.
- Penny Leapheart, A Review of Institutional Programs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females and their Children, Master of Science in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Central Missouri State University, 1997.
- Phillis J. Baunach, You Can't be a Mother and be in Prison You? Impact of Mother Child Separation, in B. R. Price & N. J. Sokoloff(ed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Women, New York: Clark Boarfman, 1982.
- Richards, Barry. The Experience of Long-Term Imprisonment.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8(2), 1978.
- Sharp F. Susan & Marcus Mendoza T. Susan, It's a Family Affair: Incarcerated Women and Their Families, Women & Criminal Justice Volume:12, 2001.
- Stanton, A. M. When Mothers Go To Jail. Lexington Books, 1980.
- Temin Engel Carolyn, Let us consider the Childeren, Corrections Today Volume:63, 2001.
- NHS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 Generated:3 September, 2007.
- <http://www.bsprism.com>
- <http://www.corrections.go.kr>
- <http://www.nicic.org/services/special/women>
- <http://www.storybookdads.org.uk>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문

이 상 돈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발표자의 요지

수형자의 기본권제한은 자유권에 대해서만 그것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이 아닌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형인에게 (심지어 선거사법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권의 제한도 성생활의 제한이나 흡연의 제한처럼 교정목적의 달성을 오히려 순기능적인 경우에까지 뻗쳐서는 안 된다.

II. 토론자의 의견

발표문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교정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유권 제한 이외에는 (참정권, 사회보장수급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제한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특히 중요한 점 두 가지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1. 1. 수형자 인권의 두 측면(시민권과 기본권)

① 발표자의 견해는 수형자의 인권보장을 상위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을 전제한다. 목적이 중요하므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헌정질서가 요구하는 ‘다양한 이익의 균형 있는 실현’과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라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권 제한원리는 뒤로 물러나야만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놓여 있다.

② 그러나 민주적 법치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실정법규범으로 구현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인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성(주권의 행사)을 통해 비로소 구성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그렇기에 시민권의 차원과 국민의 기본권 차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참정권은 주로 수형자의 국민 지위에서, 섹스권이나 흡연권은 주로 시민권의 지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섹스권이나 흡연권의 보장은 시민의 권리로서 — 여론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도 — 최대한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지만, 참정권은 입법자가 그 인정여부와 범위를 민주적 의견형성과 공론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참정권

의 고정된 크기가 민주적 입법 이전에 선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령 선거사법의 선거권제한은 그 선거법위반이 예컨대 낙천낙선운동처럼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 형기 중 또는 판결에 의해 적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 합리적이다.

④ 사견으로는 선거사법 이외에도 중범죄(합의부사건)의 경우에는 수형기간 중에 국가의사의 민주적 형성과정에 참여할 권리(제한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본다).

⑤ 선거사법이 아닌 경범죄(단독사건, 벌금형 등)의 경우에는 참정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 2. 교정과 응보 그리고 일반예방

① 발표자의 주장에 전제된 또 다른 구조적인 관점은, 수령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이 주로 교정의 목적에서만 심사되고 (피해자[집단]의) 응보 목적은 인권 밖에 있거나 인권과 충돌하는 낡은 이념으로서 그 정당성의 심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② 그러나 교정이념도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고, 정당한 응보의 행형은 일반시민들의 규범내면화(적극적 일반예방)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예컨대 성생활권은 — 미혼/기혼, 미결/기결, 소년범/성인범, 남성/여성, 치료감호자/수령인을 구별함이 없이 —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성폭력범죄 등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생활의 자유보장은 시민들이 갖는 응보감정의 혜심을 훈들어 놓을 수 있고, 성형법규법의 무기력함에 대한 인상을 확산시킴으로써, 행형이 수행해야 할 그 해당 규범의 내면화(적극적 일반예방)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습마약범죄자나 조직폭력배 등은 중범죄라 하더라도 참정권과는 달리 성생활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

④ 흡연허용은 교정심리학적으로 유용하다는 등을 고려하면 흡연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령자에게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응보감정은 적어도 수령인이 일반시민인 흡연자에게 요구되는 바, 즉 자기제어의 금욕능력 함양의 기대구조 속에서 수령자의 흡연권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즉 흡연은 교정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만 허용되며, 반드시 금연교육을 받게 하고, 일정한 금연노력의 의무를 부담한 채 그리고 누진혜택 등의 금연유도정책을 받는 한에서만 보장될 수 있을 뿐이다.

"사형제도와 인권침해"에 대한 토론문

모든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유예기간을 갖자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1. 평소 사형폐지론자이었던 사형수인, 테이비드 게일은 한 때 철학교수이자 지성인으로서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동료 여교수에 대한 강간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나흘 앞둔 상태에서 기자와의 인터뷰로 시작되는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 영화는 사형제 폐지를 응변하는 어느 활동보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2. 2007. 10. 10. 종교계, 시민단체 등은, 1997년 이래 10여 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것을 기념하여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거행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널리 알린 바 있다. 사형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10년간 집행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폐지국가 반열에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사형 제도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하여는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학자들의 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오심의 위험성, 정치적 남용 사례 등을 이유로 폐지론이 우세한 것 같다. 특히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토론자도 결코 이에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나 한 나라의 오랜 제도나 전통은 다수 국민의 내면적 동의에 터 잡은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온 것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형이라는 형벌에 대하여 우리 국민 다수가 갖는 사고는 아직은 존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로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04. 7.) 주관의 여론 조사 결과는 사형 제도 존치의견이 66.3%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네트워크 설문조사(2003. 12.)는 87%(시기상조 21% 포함), 조선일보·한국갤럽 공동여론조사 결과(2003. 9. 27.)는 52.3%, 국정홍보처 여론 조사 결과(1999. 12.18.)는 65.7%로써 5년간이라는 時差에도 불구하고 허용범위내의 조사방법론상의 차이이외에는 그다지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형존치의 근거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수단(77.1%), 범죄 예방효과(51.9%), 응보(49.5%) 등을 적시하고 있다. 확실히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아직 대다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이 아직도 이러한 폐지주장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사형제도가 갖는 위

하력에 의한 억지효과,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상정적 기능, 국민의 법감정이나 피해자의 감정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¹⁾도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 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²⁾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 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용인하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특히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사형선고 확정자 숫자도 1999년, 2000년에 잠시 20명 정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매년 5명 전후의 숫자로 감소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7. 10. 현재 사형이 선고된 65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면 재판부의 번뇌와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즉, 죄명별로 보면 살인 22명, 강도살인 24명, 준속살인 2명, 유괴살인 5명, 강간살인 10명, 방화치사 2명이고, 특히 살인 사건 중 피해자가 2명이상인 범죄행위자가 53명(81.5%), 3명 이상 살해 26명, 10명 이상 살해가 2명이고, 1명을 살해한 경우는 어린이 유괴 살해 후 사체훼손 사건으로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 가석방 받아 나온 후 재차 살인한 자로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적하여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자에게 상응하는 죄 값은 사형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형제 존치의 근거로 드는 사형이 갖는 위하력에 대하여는 적어도 문명사회에서 검증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76년에 사형 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도 살인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없고, 오히려 사형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보다 인구대비 살인범죄율은 3배나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평온을 깨는 흉악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엄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엄연한 국민감정이다. 어떤 학자는 여론이라는 것을 들쭉날쭉한 믿지 못 할 것이라고 펼쳐하고, 그러면서도 사형 제도를 비도덕적, 비양심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다. 비록 사형이 갖는 위하력에 대한 懷疑的 시각이 많다고 하지만

형벌이 갖는 사회구성원의 행위 조종기능, 통합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사고나 내면적인 가치와 정합성을 갖지 못하는 형벌 논의는 공허한 의침에 불과하다.

최근 법무부는, 사형이 갖는 범죄의 억지력과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면서 사형제가 갖는 역기능을 순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³⁾. 최근 중국에서도⁴⁾ 사형에 대하여 즉시집행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 사형집행의 연기제도를 통해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25년 내 감형할 수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를 두고 있다. 사형폐지 시 대안론으로, 1)입법적으로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자는 논의, 2)사형선고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사형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까지 자동 상소제도를 인정하거나 판례 법관의 만장일치로 하자는 견해, 사형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하자는 견해, 3)사형의 집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자유형의 집행유예나 가석방에 대응하는 사형집행의 제한제도를 두자는 견해, 사형집행심사위원회를 두어 중국과 같이 사형 집행의 연기제도를 두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원칙적으로 무기형으로 변경하도록 하자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3)의 일정기간 집행유예 제도에 대하여는, 사형선고는 현재에도 신중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자에 대하여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하게 하는 제도를 두게 되면 사형제도 그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그 구별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 특히 장기간 지난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가혹하고,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불안정과 처우상 문제가 있다는 점, 집행연기와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안이하게 집행 연기부 사형선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사형폐지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는 반대론이 강하다.

흔히 사형에 대하여는 사형제도의 갖는 특성상 교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교화 책무를 포기하고 사법살인을 정당화하는 형식론리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자라도 그 정상관계에는 경증의 차가 있고, 사형이 확정된 자라도 국가의 개선노력에 따라서는 본인도 반성하고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의 적대적 평가도 감소되어 선고시와는 달리 사형집행을 보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무기형과 사형과의 격차가 커서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형태적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장기간 사형미집행 기간 중에는 현저히 개선적 효과를 보이는 자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국가의 개선적 책무와 노력을 회피하는 자세는 이해하기 힘들다. 사형의 선고와 집행과의 사이에 상당기간이 존재하는 한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형판결의 구체적 타당성과 사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별하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합헌·각하]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헌공제19호]

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354 판결 【살인·미성년자의제강간·사체은닉】

3) 법무부, 희망을 여는 약속(2006), 119면 이하

4) 자세한 소개는 배성범, 제5차 한중형법학 학술대회 참관기, 법률신문 2007. 10. 11.(3593호), 제13면 참조

사형폐지로의 과도적·중간적 조치로서 모든 사형선고 사건에 관하여 집행을 연기하자. 그리고 5년 또는 10년 동안 국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다한 다음, 개선효과를 재평가해 보자. 그래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거나 집행을 재연기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길이 사실상 사형제도의 폐지에 근접하면서도 사형이 갖는 국민의 용보감정에 호소하고, 사형제도가 갖는 위력성을 그나마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 대 희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박 영숙 교수님의 "수형자의 가족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영국의 Storybook Dads(Moms) Program을 중심으로"를 잘 읽고, 발표를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도되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수형자와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귀휴 제도
- 가족 만남의 집
- 장소 변경 접견
- 가족 만남의 날
- 일반 접견 방식의 변화
- 서신 왕래의 폭 확대
- 가족 캠프

이런 제도들은 수형자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즉, 혜택자가 적은 프로그램이 적지 않고, 가족 중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부모 수형자와 만나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수의 SBD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타진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표문에도 재정 등 고려 요인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1)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

영국식 SBD를 도입하고자 할 때, 대상을 자녀를 가진 수형자로 할 때에도 자녀의 연령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SBD 프로그램은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수형자의 자녀는 어린아이부터 독립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수준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임원 명단

2) 프로그램 기본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SBD의 초기 수준에서는 주로 이야기 책을 읽어 녹화하여 자녀에게 보내주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산 기술이 놀라울 만큼 발전하여 이제는 기초 수준의 음성 녹음은 물론, 녹화된 동영상, 직접 연결된 온라인 동영상까지도 쉽고, 자유롭게 녹화하고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 부모의 생활상, 부모의 희망적 바램, 의도적 연극물, 다양하게 연출된 동영상들을 만들어 보낼 수 있다.

3)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 마련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부 재정: 적극적인 예산 배정
- 민간인, 시민단체, 기업의 협찬: 사업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협찬을 유도
- 수형자 가족의 자발적 협조: 일정 부분을 수형자나 그 가족들에게 직접 부담케 함

4) 제작,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단순히 녹음하는 차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고차원의 전자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 전문적인 전자 녹화 설비: 단순 녹음에서부터, 고차원의 동영상 녹화 기기 까지 필요
- 연출 전문가 필요
- 전자 기술 전문가 필요
- 음향 담당자, 미술 담당자 등 전문가 필요

5) 단계별 도입 가능성 고려

일시적으로 모든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재정과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권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시작
- 프로그램의 내용이 단순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감

수형자와 가족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SBD(M) 프로그램, 이보다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임 고문	이 주영 (국회의원, 경남 마산갑)
회장	정승재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원장)
상임 부회장	김주연 (명신대학교 전임교수) 박영숙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상임 이사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
일반 이사	강영실 (한국성서대학교 전임교수) 고명석 (명지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 공계순 (호서대학교 전임교수) 곽경수 (동국대학교 전임교수) 구주 (국회 전문위원) 길정수 (동서대학교 전임교수) 김정화 (한성디지털대학교 전임교수) 김우 (대신총회신학연구원) 김장호 (국회 전문위원) 김재훈 (한국교정복지학회) 김종훈 (김종훈변호사사무소 변호사) 김정구 (충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종운 (재단법인 대신통화 사무국장) 김나 (동서대학교 전임교수) 김영희 (서울기술대학교 전임교수) 김광민 (성균관대학교 전임교수) 김상민 (한국피해자학회) 박지현 (재단법인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혜석 (예수대학교 전임교수) 신민선 (군포시노인복지회관관장) 신우 (명신대학교 전임교수) 신희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오유현 (대불대학교 전임교수) 정명희 (신한은행 부지점장) 정예수 (신한은행 부지점장) 정병학 (육군의정병과장 대령) 정식 (육군의정병과장 대령) 정철 (간피아선교재단 대표) 정철 (명신대학교 전임교수) 정정 (한영신학대학교 전임교수) 정진 (경상대학교 전임교수) 정중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전임교수) 정중 (명지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중 (경상대학교 전임교수) 정중 (한양대학교 전임교수) 정중 (한국복지교육문화원 원장) 정중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정 (국회사무처) 정정 (법무부 교정위원) 정철 (명신대학교 전임교수) 정철 (국회교섭단체 국장) 정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정철 (한성디지털대학교 전임교수) 정철 (한국교정복지학회) 정철 (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정철 (중국청도대학교 전임교수)
감사	박응석 (박응석변호사사무소 변호사)
고문 변호사	김종훈 (김종훈변호사사무소 변호사)